

논총 2007-

# 경찰 채용시 문신제한 기준에 대한 연구

《研究陣》

연구 위원: 김 보 환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목 차

제1장 서 설 .....	99
1. 연구목적 .....	99
2. 연구내용 및 범위 .....	104
3. 연구추진 방법 .....	105
4. 기대효과 및 활용 .....	106
제2장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서 문신의 이해 .....	107
1. 문신의 방법과 목적 .....	107
2. 고대의 문신 .....	108
3. 각국의 문신 동향 .....	109
4. 일탈행위 혹은 범죄적 副文化로서의 문신 .....	111
제3장 한국의 경찰관 채용시 신체조건 관련 문제점 .....	112
1. 경찰관 채용관련 법령 개요 .....	112
2. 현행법상 문신자 규제가능성 .....	115
3. 문신자 불이익처분 관련 동향 .....	116
제4장 각국 경찰의 채용절차와 문신관련 규제동향 .....	119
1. 미국 경찰의 사례 .....	119
2. 영국경찰의 사례 .....	134
3. 캐나다 경찰의 사례 .....	139
4. 독일 경찰의 사례 .....	146
5. 일본경찰의 사례 .....	162

제5장 결론 : 요약 및 정책제언 .....	163
1. 각국 경찰의 문신관련 규제동향 요약 .....	163
2. 한국경찰의 문신규제 방안을 위한 제언 .....	168
참 고 문 헌 .....	172
참고판례(경찰관 사례) .....	176
참고판례(교도관 사례) .....	187
同사안(교도관)에 대한 고등법원 판례 .....	190

## 표 차 례

<표 1> 연구대상국별 구체적인 자료수집 방법 .....	105
<표 2> Los Angeles Times 문신관련 중요기사 .....	127
<표 3> 영국런던 수도경찰청의 문신규제관련 내용 .....	137
<표 4> 벤쿠버경찰청 문신관련 【규칙 및 절차규범】 .....	145
<표 5>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경찰의 문신관련 대외 공문서 .....	153
<표 6> 독일경찰의 문신촬영 동의서 양식 .....	155
<표 7> 신체검사결과 不合格 처리된 경우 공문서 .....	157
<표 8> 문신한 지원자의 서약서 작성양식 .....	158

## 그림 차례

<그림 1> 한국경찰의 신규채용절차 및 신체검사 .....	113
<그림 2> 뉴욕경찰청 신규채용 절차 및 신체검사 .....	120
<그림 3> 로스엔젤레스경찰청 신규채용 절차 및 신체검사 .....	125
<그림 4> 독일 연방경찰의 선발절차 개요 .....	149
<그림 5> 채용절차와 문신관련자 조치 절차 .....	154
<그림 6> 한국 경찰의 문신규제방안 개요 .....	169



## 제1장 서 설

### 1. 연구목적

경찰직의 전문화(professional) 추세에 따라, 우수한 경찰관을 선발(selection)하고 채용(employment)하는 절차가 경찰인사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여, 경찰직에 충원하는 것이야말로 경찰활동의 성과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경찰행정 서비스만족도 및 경찰직에 대한 對국민 신뢰도 향상과도 직결되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 각국의 경찰관서에서는 신체조건, 약물복용전력, 심리상태, 학력 및 신원조사(background check)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채용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多민족국가로 이루어진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소수민족 혹은 소수자 보호(minority, 종교, 성별, 인종, 특별한 신념, 性전환자 등)를 위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소위 ‘평등권침해’와 관련된 이슈들도 채용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2006년 5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약 1%(48만-50만명 추산)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개방화, 국제화추세에 따라서 한국도 多민족 혹은 多인종국가 반열에 진입했다고 한다. 선진국에서는 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에게도 公職을 개방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유럽연합(EU) 소속의 外國民들에게도 경찰직 문호를 열어 놓고 있다. 캐나다 벤쿠버경찰청(VPD)의 경우, 소수자 보호차원에서 性전환자(transgender) 1명을 경찰관으로 채용, 경찰청사내에 특별한 시설까지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수년전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군대내 同性愛者 문제가 화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이슈들이 한국의 공직 채용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고 있지만, 조만간 크게 논란될 것이라는 것은 쉽사리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경찰관 채용과정에서 수반되는 외형적 신체검사와

관련, 몸에 그려진 文身(tattoo)으로 인한 채용제한에 대해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경찰 채용 시 문신제한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권고)한 바 있다.<sup>1)</sup> 신체에 그려진 문신으로 인하여, 경찰청이 채용과정에서 不利益처분(불합격 처리)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 법령으로서는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 35조 1항 1호 (신체검사),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34조 7항 신체조건 등에 근거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同법령 등에 따르면, 문신규제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한 불합격 처분을 할 경우, 자칫 응시자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야기될 수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 서구 각국에서는 文身이 일종의 美容행위 혹은 패션(art)으로 인식되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보편화되어 있으며, 관련 산업이 번성하고 있다.<sup>2)</sup>

1) <http://www.sportsseoul.com/news/life/social/050928/20050928114230226000.htm>(2007년 4월 10일 검색) 경찰 ‘문신자 채용 제한 계속’ 인권위 회신-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9월 28일 “문신을 이유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차별이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경찰청장에 권고한 데 대해 경찰청이 최근 이수용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권위에서 보낸 회신에서 “경찰업무의 특수성, 문신의 특성에 관한 연구결과와 문신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 등을 감안해 국가공권력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신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장애인의 이름을 몸에 새기거나 백반증 환자에 피부색을 주입하는 시술 등 의료인에 의한 합법적 시술로 의학적 필요성이 소명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5년 4월 한 20대 남성이 15세 때 새긴 문신을 이유로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 탈락시킨 것은 차별이라며 낸 진정사건에 대해 문신자 제한을 용모에 따른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경찰청장에게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한바 있다.

2)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42499&g\\_menu=021300](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42499&g_menu=021300)(2007년 4월 10일 검색) 문신도 이제 온라인으로 쇼핑한다, “문신, 이 문양으로 새겨주세요!”-온라인으로 자동차, 컴퓨터, 핸드백도 사는데 문신이라고 안될까? 바야흐로 온라인 쇼핑의 시대다. 온라인 쇼핑에서는 가격은 물론 디자인, 사용자 리뷰, 성능정보까지 비교할 수 있다. 더구나 결정을 위한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제 문신까지도 온라인 쇼핑 시대를 맞고 있다. 미국 지역지 ‘벤추라카운티스타’는 9일(한국시간) 미국 덴버에 위치한 타투파인더닷컴(tatfinder.com)을 소개하며 문신도 온라인 구입이 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타투파인더닷컴은 70명의 문신 예술가들이 디자인한 1만4천여개가 넘는 문양을 자사 사이트에 올려놓고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가격대는 4달러에서 20달러까지 다양하다. 수많은 종류의 디자인 중 장점을 뽑아 주문제작도 가능하다. 돈을 지불하고 다운로드받은 문양은 가까운 문신가게로 가져가 문신 전문가에게 건네주기만 하면 된다. 루 바다치 타투파인더 사장은 일단 부담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가게에 들어와서 벽에 걸린 그림을 본 후에야 결정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회수에 상관없이 다양한 문양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어 문신에 대한 거부감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을 덧붙였다. 실제로 2003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16%가 문신을 하고 있지만 문신을 새긴 사람들 중 약 17%가 문양에 불만을 드러냈다. 2007년 01월 10일자 기사

최근에는 한국에도 각종 문신을 전문적으로 시술하는 업소들이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는 등 확대일로에 있다. 또한 대중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유명연예인들의 문신행위가 일반화되면서,<sup>3)</sup> 이를 모방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문신부위들이 대중매체를 통하여 ‘섹시한 문신’ 운운하면서,<sup>4)</sup> 젊은이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한껏 불러일으키고 있다.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패션의 한 부분으로 인식, 이를 시술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 일부 일탈적 집단(조직범죄단 등)의 하위문화 혹은 전유물로 여겨졌던 문신행위에 대한 인식들이 변하면서, 여성들, 연예인들, 젊은층으로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문신행위가 과거와는 판이하게, 일종의 시대적 경향(trend) 혹은 유행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文身에 대해서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접근과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制服을 착용하고 엄정하게 法執行을 하는 한국의 경찰공무원이 문신을 하였을 경우, 일반시민들의 반응이나 정서를 고려한다면, 서구사회처럼 관대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대체로 경찰관들은 이러한 문신행위에 대해서 보수적이며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 3)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6&articleid=2007040515520048494&newssetid=83>(2007년 4월 9일 검색) 이모양 ‘봄 맞아 발등에 벚꽃 타투 문신’ 2007년 04월 05일 서울에서 열린 ‘07/08 F/W NWS 서울컬렉션’ 디자이너 패션쇼에 텔런트 이모양이 발목에 벚꽃 그림의 타투를 하고 참석 했다.



- 4)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문신행위를 보도하고 있는 대중매체들 사례: [http://media.paran.com/sphoto/news\\_view\\_photo.php?dimnews=1194657&year=2006&rtlog=MP](http://media.paran.com/sphoto/news_view_photo.php?dimnews=1194657&year=2006&rtlog=MP) (2007년 4월 10일 검색) 고00-이00-이0리, ‘섹시코드’ 문신없이는 안돼! ‘섹시코드는 문신으로 통한다?’ ..... 연예계 톱스타들의 문신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어떤 미녀스타가 파격적이고 섹시한 문신을 선보일지 기대를 모은다.
- 5) 2005년 9월 28일자 관련기사 동향에 따르면,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관은 신체 및 용모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며 “하지만 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문신자의 과거 비행행위와 향후 불법적 방식의 충동적 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정적 의

또한 몸에 흉측한 文身들을 한 조직범죄단원들의 모습이<sup>6)</sup> 언론에 종종 보도되는 사례들을 접하다보면, 한국사회에서는 文身이 여전히 일종의 일탈집단(혹은 범죄자)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직에 응시하려는 일부 젊은이들까지 文身을 시술한 사례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2004년의 경우, 경찰직 지원자 가운데, 12명이 문신행위로 신체검사과정에서 탈락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sup>7)</sup>



<사진> 조직폭력배들의 문신한 모습

한편, 文身의 종류, 규모, 내용 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규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文身으로 인한 공직채용 제한문제는 경찰업무수행 및 경찰공무원의 품위에 대한 일반국민의 정서와 경찰직 응시자의 기본권보장간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sup>8)</sup>

이와 관련, 한국 경찰청에서는 지난 2006년 5월 경찰관채용관련 일부 법령의 내용을

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전제했다. 독일의 경우, 수년전 일부 도시의 경찰관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신 등 행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여론조사의 사례가 보고되지 않다.

6) <http://www.police.go.kr/pds/whitePaperView.do?id=2515>(2007년 3월 7일 검색)

7)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605/h2006050318361322000.htm>(2007년 4월 10일 검색)실제 2004년 경찰관 채용 때는 1차 신체검사에서 12명이 문신으로 인해 불합격됐다고 한다.

8) 2006년 3월 5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제3회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시 문신확인제도’를 소관과제로 선정,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개정하여,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었다.<sup>9)</sup>

선진 각국에서는 이러한 이슈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들을 수립, 채용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大卒학력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경찰관서의 채용지침과 관련, 미국의 法院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1985년 Davis v. Dallas 사건), 캐나다 밴쿠버(Vancouver)경찰청에서는 文身과 관련하여, 노출되는 신체면적의 30% 이상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신을 허용하고 있는 동향이다.

또한 영국의 수도경찰청에서는 경찰관들의 화장(make up), 귀걸이착용, 헤어스타일, 피어싱(piercing), 히잡 및 터번착용(turban), 보석착용(눈에 띄지 않게 착용), 드레드-락(dreadlocks, 가늘게 땠은 머리), 턱수염(beard) 등에 관해서 구체적 제한 및 금지 규정을 정해놓고 있다. 또한 신체의 어떤 부위에라도 文身이 새겨진 지원자는 구체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며, 특히 얼굴, 팔(lower arm)혹은 손에 새겨진 文身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문신의 量, Size, 개수에 상관없이 일반 시민들이나 동료경찰관들에게 무례한/유치한/외설스러운, 인종차별적, 性的인, 暴力的인, 공포감 조성적 혹은 협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문신은 신체의 어떠한 부위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경찰에서는 신장, 연령, 기타 신체조건에 대해서도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9)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605/h2006050318361322000.htm>(2007년 4월 10일 검색) 경찰, 인권위 권고 수용...불합격 관행 바꾸기로: '문신(文身)한 경찰관' 이제 더 이상 외국 경찰의 얘기가 아니다. 내년쯤이면 우리나라에서도 몸에 알록달록 모양을 새겨넣은 경찰관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고쳐 상반기(2007년)부터는 문신을 해도 신체검사에서 떨어뜨리지 않기로 했다고 2006년 5월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용모가 추악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칙에 근거, 문신이 있는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해 왔다. 이 같은 경찰의 방침은 지난해(2005년)와는 180도 다르다. 경찰은 지금까지 "경찰관은 용모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2005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 채용 시험에서 문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한 것은 부당하다는 S(26)씨의 진정을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문신의 음란성, 경찰 제복을 입었을 때 외부로 노출되는 정도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 문신을 했더라도 경찰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바꾸라고 경찰청에 권고했었다. 경찰의 이 같은 변화는 시대 변화상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제는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문신을 개성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기에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선진 각국의 이러한 사례들은 향후 한국 사회가 직면할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할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최근 경찰관 채용시 제기된 文身제한과 관련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각국의 사례들을 조사·분석하여 신체조건에 관한 구체적 기준들을 적실하게 제시함으로써, 경찰업무수행 및 국민정서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응시자의 기본권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및 범위

본 논문에서는 문신의 역사·문화·범죄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다. 현행 한국 경찰공무원 채용시 신체검사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법령들을 검토하고, 경찰관 채용 시 문신제한에 대한 구체적 범위들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독일,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의 경찰관 채용시 실시하는 신체검사 절차와 醫師의 참여, 문신에 대한 구체적 제한 규정 및 사례, 입법동향, 관련된 쟁송사례 등을 입수한다. 이를 토대로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국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한다.

- 한국의 경찰관 채용시 문신관련 신체검사 불합격자의 이의신청 사례
- 각국의 경찰관 채용절차 개요 및 신체조건에 대한 구체적 사례  
(신장, 시력, 몸무게, 연령, 헤어스타일, 복장, 외모, 심리상태, 용모관련 내용들)
- 경찰관 채용 시 문신제한 기준과 관련하여  
서구 각국들(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과 문신에 대하여 엄격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일본경찰의 사례
- 경찰직무 수행에 부합하는 문신제한 규정 마련을 위하여 문신의 크기, 내용 등 적실한 기준을 제시한다.

### 3. 연구추진 방법

본과제는 경찰실무적인 접근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인 바, 실무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 따라서 연구자가 2006년 하계 및 2007년 동계방학을 이용하여 선진 각국의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자료(채용지침 등 내부자료)를 입수하거나,
- 각국의 경찰학자 및 경찰실무가들과 인터뷰를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표 1> 연구대상국별 구체적인 자료수집 방법

<p>▷ 현지 경찰관서 방문을 통한 자료 입수: 영국수도경찰청(MPS), 독일 연방범죄수사청(BKA), 바덴-뷔르템베르크州 경찰청 일본경찰청 사례 캐나다 연방경찰청(RCMP) 및 밴쿠버경찰청(VPD),</p> <p>▷ 인터넷 등을 통한 자료 입수 미국의 일부경찰관서 사례</p>
---

- 경찰실무자료 가운데 미흡한 부분은 국외의 관련문헌(논문, 법령 등)을 수집하여, 이를 보충하였다.
- 특히 독일경찰이 경험하였던 유사한 사례에 대한 행정법원 판례(Urteil)를 입수하여, 한국 경찰이 채용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 끝으로 선진 각국 경찰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한국 경찰이 관련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적실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4. 기대효과 및 활용

- ▷ 본연구결과를 통하여 선진 각국들의 경찰관 채용시 문신관련 다양한 지침들을 구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경찰관 채용시 뿐만 아니라 재직 경찰관들의 근무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용모복장, 복장, 헤어스타일(염색, 두발상태), 화장, 장신구(귀걸이, 보석착용), 수염, 몸무게, 시력, 외모 등에 대한 이슈들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실무 자료가 될 것이다.
- ▷ 서구 각국의 경찰관 채용지침들을 확보, 분석함으로써 문신관련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데 보다 더 적실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또한 연구결과물은 경찰업무수행 및 국민정서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응시자의 기본권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련법령을立案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찰관 채용시 문신 등 신체조건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침해 논란을 해소하고 법규의 명확성을 기함으로써 '법치주의 경찰행정' 및 경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제2장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서 문신의 이해

### 1. 문신의 방법과 목적

문신은 피부표면 밑에 영구적인 색깔을 새겨 넣는 고전적인 예술의 한 형태이다.<sup>10)</sup> 특히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위생적인 방법이 요구된다. 살갓에 상처를 내거나 바늘로 찔러 물감이나 먹물로 글씨·그림·무늬를 새기는 것이다. 색소를 사용하지 않은 방법을 특히 반흔문신(癍痕文身)이라 하는데, 피부에 칼로 흠집을 내거나, 살갓을 불로 지지거나 또는 상처가 잘 낫지 않을 물질을 스며들게 함으로써 움푹 패이게 하거나 볼록 솟아오르게 한 흔적으로 무늬를 새기는 것을 말한다.



<사진> 전기로 문신을 새기는 모습

좁은 뜻의 문신은 생선뼈·조개껍데기·식물가시 등 자연물의 끝을 솔(귀얄) 모양으로 뾰족하게 다듬은 나뭇조각, 무늬를 새긴 나무도장(스탬프), 문신용으로 고안된 특별한 칩 등을 사용하여 피부에 상처를 내고 염료를 문질러 배게 한다. 그 밖에 칩(바늘)에 색소를 발라서 찌르는 방법, 물감 문힌 실을 바늘에 꿰 꿰거나 물감을 칠한 바늘 따위로 직접 피부를 꿰어 무늬를 그리는 기법 등도 있다. 사용되는 색소는 검정(검댕)이 많고 빨

10) <http://www.barrowbc.gov.uk/docs/TattooInfo.doc>(2006년 10월 19일 검색)

강·과랑·녹색 등의 색소를 사용하기도 한다.

문신의 목적은 장식 외에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는 통과 의례(通過儀禮)의 하나로서 소년·소녀가 성숙한 한 사람의 남성·여성이 되기 위하여 成人式을 할 때에 문신을 한다. 부족이나 씨족의 귀속표지가 되는 문신도 있으며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그 밖에 문신이 질병 치료의 목적 또는 병마를 피하기 위한 주술적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문신을 하지 않으면 죽은 후에 내세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으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징벌의 수단으로서 문신을 하기도 하였다.<sup>11)</sup>

## 2. 고대의 문신

문신의 풍습은 아득한 옛날부터 있었으나, 피부는 부패하기 쉬우므로 미이라로 된 것 이외에는 옛날의 자료가 적다. 이집트에서는 BC 2000년경의 미이라의 팔이나 가슴에 신의 이름이나 신의 상징을 나타내는 문신이 남아 있다. 알타이지방 볼쇼이우라간江 오른쪽 연안의 파지리크 古墳群의 제2호 묘에서 발견된 남자 미이라(BC 4~BC 3세기로 짐작된다)의 팔다리·가슴·등에는 유익수(有翼獸)·새·염소·사슴·물고기 등의 동물 무늬가 문신되어 있었다. 알래스카의 세인트로렌스섬에서 발견된 1600년 전의 것으로 생각되는 얼어붙은 미이라에서도 문신을 볼 수 있다. 로마시대에는 죄수·노예에게 문신을 하였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트라키아에서는 여성이 고귀함의 표지로서 문신을 하였다. 유럽에서도 골·브리튼·게르만 등 제족(諸族)도 문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교가 퍼짐에 따라 이 풍습은 사라졌다. 《구약성서》 <레위기> 19장의 문신이 금지된 구절에서 유대에서도 문신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근동지역에서는 전부터 동양 집시가 문신을 해주는 문신사로서 활동하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남부를 제외하고는 옛날부터 문신을 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오래된 중국의 문헌 《삼국지》 <위지> 倭人傳에 기록된 바와 같이 문신 풍습의 역사가 길다.

11) <http://kr.dic.yahoo.com/search/enc/result.html?pk=13524000&p=문신%20&field=id&type=enc#4>  
(2006년 5월 7일 검색)

### 3. 각국의 문신 동향

#### 1) 반흔문신

주로 피부색이 진한 인종들이 했으며, 특히 아프리카에서 성행하고 있다. 반투계의 여러 부족이나 나일강 상류지역에서는 상처자국이 부풀어오른 부조(浮彫) 모양의 멧진 무늬를 볼 수 있다. 예컨대 누바族의 여성은 가슴·배·등에 좌우대칭의 기하학적 무늬를 새겨 넣는다. 그들은 피부를 꼬집어 올려 칼집을 내고 숫·재·모래 등을 비벼 넣어 상처자국이 부풀어 오르게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의 경우 중앙부에서는 부싯돌이나 유리의 얇은 조각으로 피부를 상처 내어 재 또는 독수리·매의 솜털을 문질러 넣으며, 북부에서는 불로 달군 막대기나 숫으로 피부를 지저 상처를 낸다. 불로 지지는 방법은 티모르섬(인도네시아)이나 북아메리카의 세미놀族에서도 볼 수 있다. 반흔문신은 그 밖에 태즈메이니아섬·피지제도·누벨칼레도니섬 등의 멜라네시아, 남아메리카, 말레이반도의 일부에서도 했었다. 솔로몬제도에서는 큰 박쥐의 발톱으로 남녀 모두 얼굴에 반흔을 넣는다. 안다만제도에서는 남녀 모두 어릴 때부터 시일을 두고 되풀이해서 반흔을 넣는다. 수술은 차돌(석영)·유리의 얇은 조각을 이용하여 팔·등·가슴·배·다리에 문신한다.

#### 2) 오세아니아의 문신

색소를 피부밑에 침착시키는 문신은 피부색이 연한 인종을 중심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다. 영어로 문신이란 뜻인 태투(tattoo)가 타히티語에서 비롯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폴리네시아에서 성행하였다. 그 중에서도 마르키즈제도의 문신이 유명한데 얼굴·가슴·등·배·손·다리 외에 입술·눈꺼풀·잇몸에까지 문신을 한다. 무늬는 주로 나비가 넓은 직선적인 것인데, 여성의 입술에는 석쇠 모양의 문신을 한다. 뉴질랜드 마오리族의 경우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전에는 높은 지위의 남자는 얼굴 전체에 직선·곡선·소용돌이형으로 이루어진 매우 복잡하고 아름다운 문신(모코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오리族은 남녀 모두 문신을 하는데 여성의 경우는 주로 입술과 턱에만 하였으며, 성숙기에 이르러서도 입술에 문신을 하지 않으면 수치로 생각하였다. 또 여성의 턱에 한 문신은 결혼했

음을 의미하였다. 남성은 여성보다 문신을 많이 하는데, 특히 추장은 정성들여 문신을 하며 部族이나 貴族의 표지인 특유한 무늬를 넣었다. 그 밖의 남성은 추장의 문신무늬를 간략하게 하여 넣었으므로 얼굴의 문신을 보면 소속집단을 알 수 있었다. 사모아제도의 남성은 문신을 하지 않으면 제 뿔을 다하는 사나이로 인정되지 않았다. 할례를 마치고 16세가 되면 허리부터 무릎에 걸쳐서 정강이·하복부·엉덩이 등에 작은 갈퀴 모양 도구로 복잡한 기하학적 무늬의 상처를 내고 염료를 발랐다. 이것은 심한 고통이 따를 뿐만 아니라 패혈증에 걸려 죽는 일조차 있었다. 멜라네시아에서도 문신이 성행하는데, 일반적으로 폴리네시아의 문신에서는 직선적인 무늬가 많은 데 비해서 멜라네시아에서는 곡선적이며 비대칭적인 것이 많다. 뉴기니에서는 많은 부족이 문신을 한다. 피지제도에서도 전에는 문신을 하였는데 시술 중에는 격리되며 태양을 봐서는 안되었다. 애드미럴티제도에서는 남자는 가슴과 어깨에 반흔문신을 하고, 여자는 눈 주위에는 둥글게, 얼굴 전체와 몸의 앞면 상부에는 사선이 교차하는 무늬의 문신을 하였다. 누벨칼레도니섬에서도 특히 여성이 얼굴·팔·가슴에 파랑이나 검정의 문신을 하였다. 그 밖에 바누아투의 뉴헤브리디스제도, 파푸아뉴기니의 뉴아일랜드섬·뉴브리튼섬의 일부, 마이크로네시아지역의 팔라우제도·야프섬·마셜제도·길버트제도 등에서도 문신을 했었다.

### 3) 아시아의 문신

아시아에서는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문신이 성행하고 있다. 필리핀의 칼링가족은 다른 부족에 대한 머리사냥의 성공을 기리기 위하여 가슴이나 배에 문신을 하였다. 인도의 나가족은 소녀가 성년의 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문신을 해야 한다. 10세나 11세가 되면 먼저 발에, 이듬해에 턱·가슴·어깨, 3년째에는 종아리, 4년째에는 팔·배에 문신을 한다. 나뭇조각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식물의 가시로 만든 도구로 두들겨서 검은 물감을 넣는다. 인도의 콘드족도 여성은 결혼 전에 문신을 한다. 염료로는 유연(油煙)과 숯과 향료의 가루를 피마자유에 녹인 것을 불로 태우고 남은 검정 재를 사용한다. 미얀마의 산족이나 버마인들도 문신을 많이 한다.

#### 4) 한국의 문신

자문(刺文)·입묵(入墨)·자청(刺靑)이라고도 한다. 중국의 오래된 문헌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에 <마한 남자들이 때때로 문신을 하였다>고 하였고, 또 변한 사람들도 <남녀가 왜(倭)와 같이 문신을 하였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한국의 문신 역사도 오래되었다. 이러한 구절을 단순히 倭의 풍속을 모방하여 자자(刺字)만 했을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으나, 같은 문헌에 마한(馬韓)인이 장식하기를 좋아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문신은 장신구·색깔무늬 등의 장식이 포함된 멋 내기를 위한 수단이며 주부(呪符)였고, 신분과 계급을 표시하는 방편이었다고 생각하는 說이 강하다.

고려·조선 때는 도둑의 이마에 <도(盜)>라는 글자를 자자(刺字)했으며, 연산군 때는 도망한 공·사노비를 붙잡아 <도노(逃奴)> <도비(逃婢)> 등의 글자를 얼굴에 새겨 넣었다. 한편 문신은 사랑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조선말까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피부에 새겨 넣는 例가 있었다. 또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의 수단으로 문신하기도 하였다. 강원도 산간지방에서는 전염병이 유행할 때 이마에 붉은 동그라미를 새겼으며, 평안북도에서는 임신부가 난산할 경우 발바닥에 <천(天)>이라는 글자를 입묵했다고 한다.

#### 4. 일탈행위 혹은 범죄적 副文化로서의 문신

사회학자인 클로워드(R. A. Cloward)와 올린(L.E. Ohlin)은 분화적 기회구조이론과 관련하여 범죄적 副문화(subculture), 갈등적 副문화, 퇴행적 副문화에서 조직범죄집단 문화의 특수성을 주장하고 있다.<sup>12)</sup> 특히 조직범죄집단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副문화로서 손가락 자르기, 文身문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副문화 가운데, 문신은 협기나 위협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12) R. A. Cloward and L. E. Ohlin, *Delinquency and Opportunity: A Theory of Delinquent Gangs*(New York: Free Press, 1960), p. 145; 이상현, 『범죄심리학』, 제3판(서울: 박영사, 2004), 274면에서 재인용.

## 제3장 한국의 경찰관 채용시 신체조건 관련 문제점

### 1. 경찰관 채용관련 법령 개요

경찰관 채용(신규채용) 및 임용 등에 관한 기본법령으로서는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등이 있다.

#### 1) 경찰공무원상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경찰공무원법[법률 제7967호] 제7조에서는 경찰공무원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 ① 警察公務員은 身體 및 思想이 健全하고, 品行이 方正한 者중에서 任用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警察公務員으로 任用될 수 없다.
  1. 大韓民國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資格停止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者
  5. 資格停止이상의 刑의 宣告猶豫를 받고 그 宣告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6. 懲戒에 의하여 罷免 또는 解任의 處分을 받은 者 등이다.

경찰청에서는 신체검사시 문신을 갖고 있는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경찰관 신규채용 과정에서 문제되고 있는 “지원자의 문신”과 관련, 경찰공무원법상의 관련조문을 토대로 살펴보면, 문신한 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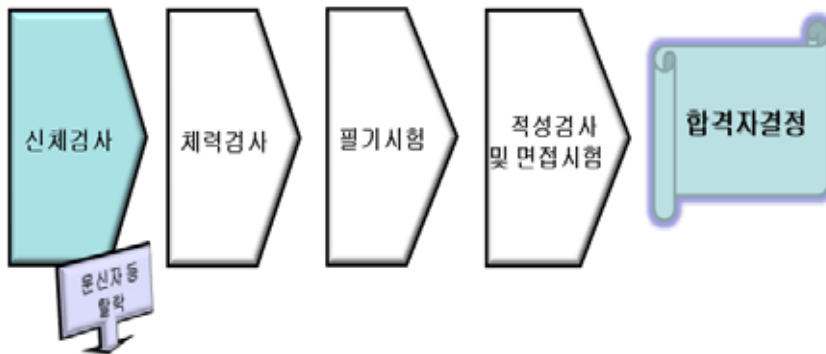
를 “신체가 건전하지 못하다거나 혹은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者”로 평가할 소지는 다분히 있다. 과거 문신행위가 특정한 일탈계층에 국한된 점, 폭력적 副문화 혹은 조직범죄단원들의 신체적 특징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재직/신규 경찰관이 문신을 한 채 대국민 법집행업무를 할 경우,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경찰측의 우려를 쉽사리 예상할 수 있다.<sup>13)</sup> 또한 同法상의 규정을 근거로 문신한 지원자를 부적격자로 판단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同규정상의 “신체 및 사상의 건전 혹은 품행의 방정” 등은 상당히 불확정적 개념이고, 구체성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이 특정한 개인에게 불이익처분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해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 2) 채용절차와 경찰공무원임용령상의 신체검사 등

【경찰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5조 시험의 방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신체검사·체력검사·..... 서류전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경찰관 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sup>14)</sup>

<그림 1> 한국경찰의 신규채용절차 및 신체검사



13) 문신의 내용이 만약 성적, 폭력적, 일탈행위, 인종차별, 욕설, 모욕,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경찰측의 우려는 훨씬 더 높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

14)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6조 (시험의 구분 등)을 토대로 필자가 도표화하였다.

경찰직 지원자의 신체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적 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검사는 경찰관 채용과정에서 중요한 시험방법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문신을 한 지원자의 경우, 同규정을 근거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신체적 조건”을 가진 者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크기(면적)의 문신 및 불법적 시술을 통한 문신은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호하지 못한 건강상태”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

이러한 판단은 독일경찰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독일경찰에서는 경찰직 지원자의 신체에 대해서 의사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피부상의 질환(疾患)이나 질병여부 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문신행위자의 대한 의학적 판단(의사의 소견)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신체검사는 다른 시험방법보다 제일 먼저 실시된다. 신체검사에서 탈락하게 되면, 이후 다른 모든 시험단계에 응시할 수 없다.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험방법의 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sup>15)</sup> 이와 같은 신체검사과정은 경찰직 지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문신자를 신체검사과정에서 불합격 혹은 탈락(脫落)시킬 경우, 지원자들의 반발이나 권리침해를 둘러싼 쟁송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다. 한국경찰의 경우, 채용절차에서 신체검사가 가장 먼저 실시되고 있는 바, 후술하는 독일, 영국, 캐나다 경찰과는 선발 절차면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상의 응시연령은 순경급은 18세 이상 30세 이하이다. 선발계급별로 연령상의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신체조건은 하위법령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34조에서 정하고 있다.

### 3)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상의 구체적 신체조건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개정 2006.11.8)】 제34조 7항 신체조건 등에 근거하여, [별표 5] 에서 구체적인 신체조건을 규정하고 있다.<sup>16)</sup> [별표 5] 에 따르면, 체격,

15) 경찰청공고(제2007-4호)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공고(2007년 2월 22일)에 따르면, 필기시험→신체, 체력, 적성검사→면접시험 순으로 채용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16)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응시자격등의 기준) ..... ⑦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키(상한선 없음), 가슴둘레, 시력, 색신, 청력, 혈압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11월 4일 시행된 **동시행규칙**에서는 경찰공무원채용 신체조건표에서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용모관련 내용을 규정한 바 있었으나, 2006년도 11월 개정법령에서는 **동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

과거법령에 따르면, 문신관련자에 대해서 **동내용**(“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을 근거로 신체검사과정에서 선별적으로 불합격시킬 수 있었으나, 2007년 4월 현재 관련근거가 없어졌거나 미약하여 문신한 경찰직 지원자를 불합격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문신한 지원자를 탈락시키게 되면, 심각한 쟁송상황에 휩싸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등에서 정하지 않는 신체검사 규정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하는 바, **동규정 제4조**에서 [불합격 판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sup>17)</sup>

이처럼 경찰공무원 임용 및 일반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등에 따르면, 문신을 한 공직 지원자에 대하여 불합격처리할 수 있는 관련근거가 매우 미약하다 할 것이다.

## 2. 현행법상 문신자 규제가능성

2006년도 11월에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상의 별표5에서 용모관련 내용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경찰직 지원자 가운데 문신을 한 자에 대해서 제1단계 시험-신체검사-에서 불합격처리 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는 과거 2005년 관련규정을 통해서도 불합격처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지만, 관련내용이 삭제된 2007년 현재의 상황에서는 달라졌다. 굳이 가능하다면, **【경찰공무원법】 제7조**상의 “警察公務員은 身體 및 思想이 健全하고, 品行이 方正한 者중에서 任用한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삼을 수

의한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 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하며, 특수부서에 근무할 자 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신체조건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1.8.12, 2006.11.8>

- 17)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2006.12.29개정)에 따르면, 1. 일반결함, 2. 비·구강·인후기관계통, 3. 치아계통, 4. 흉부, 5. 심장·혈관 및 순환기계통, 6. 복부장기 및 내장계통, 7. 생식비뇨기계통, 8. 내분비계통, 9. 혈액 또는 조혈계통, 10. 신경계통, 12. 귀, 13. 눈, 14. 정신계통 등이다.

있을 것이다.

한편, 헌법상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sup>18)</sup>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문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최소한에 그쳐야할 것이다.

### 3. 문신자 불이익처분 관련 동향

2004년도 경찰관(순경) 채용시 1차 신체검사에서 응시생 12명이 문신 때문에 불합격 처리된 바 있었다.<sup>19)</sup>

2005년 4월 20대 남성 한 명이 15세 때 새긴 문신을 이유로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 탈락시킨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바 있다.

이후 동사건에 대해 인권위원회(2005년 4월)에서는 ‘경찰공무원 채용시 몸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시키는 것은 차별’이라며 문신자 제한을 용모에 따른 차별행위로 규정하였다. 문신의 음란성, 경찰 제복을 입었을 때 외부로 노출되는 정도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 문신을 했더라도 경찰관이 될 수 있도록 해당규정을 바꾸라고 경찰청에 권고한바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신체조건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불가피하며, 경찰관의 몸에 문신이 있을 경우 일반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조건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2005년 9월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서 불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다.<sup>20)</sup> 당시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경찰은 경찰 업무의

18)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은 국민이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참정권(參政權)의 일종이다. 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를 담임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는 행정부(行政府)·사법부(司法府)의 직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지방의원 기타 일체의 공공단체(公共團體)의 직원의 직무를 포함한다. 그 밖에 본조는 참정권에 관한 국민평등의 원칙을 선언하는 뜻을 가지지만, 국민 각자에게 그 자격 여부를 불문하고 직접 공무원에 취임하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에 의한 당선, 일정한 자격, 시험합격 등을 공무원 취임의 조건으로 하는 것은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출처: <http://kr.dic.yahoo.com/search/enc/result.html?pk=10873600> &p=공무담임

19) <http://www.sportsseoul.com/news/life/social/050928/20050928114230226000.htm>(2007년 4월 10일 검색)

20) <http://www.sportsseoul.com/news/life/social/050928/20050928114230226000.htm>(2007년 4월 10일 검색)

특수성과 국민의 정서 등을 감안해 공권력의 신뢰를 유지하고 안심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신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sup>21)</sup>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관은 신체 및 용모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며 “.....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문신자의 과거 비행(非行)행위와 향후 불법적 방식의 충동적 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정적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전제했다. 경찰청은 “현재 법원의 判例는 문신시술을 의료행위에 국한,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문신은 불법의료행위로 이뤄지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들 경찰관이 불법적 행위인 문신을 단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의 이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름은 몸에 새기거나 백반증 환자에 피부색을 주입한 경우는 법적인 의료행위이므로 이는 예외로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에서는 신체검사와 관련, “용모가 추악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문신이 있는 응시자를 불합격처리 하였다.

한편 경찰청은 그동안 문신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추진하면서, 2006년 5월 3일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을 고쳐 2007년 상반기부터는 문신을 해도 신체검사에서 떨어뜨리지 않기로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sup>22)</sup>

이처럼 문신을 둘러싼 인권위원회의 관련규정 개정 권고동향에 대해서, 초기에는 다소 부정적 입장이었던 경찰청의 입장이 최근 들어 긍정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입장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시술에 의한 문신행위,<sup>23)</sup> 법집행기관에 대한

21)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section\\_id2=&office\\_id=057&article\\_id=0000027390](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section_id2=&office_id=057&article_id=0000027390)(2007년 4월 10일 검색)

22)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605/h2006050318361322000.htm>(2007년 4월 10일 검색)

23)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4&articleid=2007030119414174619&newssetid=509>(2007년 4월 10일 검색) [중앙일보] 2007년 03월 01일(목) 의료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 관련 단체들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쟁점 4: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규정-명확히 명시해야 피해보상 쉬워 ... 양성화하면 부작용 심각해져.....현재 문신이나 피어싱 등은 유사의료 행위로 규정돼 있다. 非의료인이 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보건위생상 문제가 없다면 일반인들도 이런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 단체는 유사의료 행위를 법에 규정해야 이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찬성하는 반면 의료계는 의사들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반대한다. 조 위원은 “문신 등은 非의료기관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으며 그 규모는 연 4조~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신뢰문제, 문신을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시각과 부정적인 인식, 문신이 갖고 있는 폭력적 하위문화 등과의 관련성을 감안하면,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

“이런 상황에서 유사의료 행위는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조인=박 대표  
표는 “문신은 의사들에게도 허용돼 있지만 실제 문신을 시술하는 의사는 거의 없다”며 “법과 현실  
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라도 어떤 것이 유사의료 행위인지에 대한 규정 확립은 필요하다”고 말했  
다. 권 교수는 “합법화하는 것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제4장 각국 경찰의 채용절차와 문신관련 규제동향

### 1. 미국 경찰의 사례

#### 1) 뉴욕경찰청

##### (1) 뉴욕경찰청(NYPD)의 일반적 채용절차

지난 5년 동안 뉴욕경찰청(New York Police Department) 소속 경찰관 채용과정에서 약 86,000여명이 지원하여, 12,318명이 선발되어 임용되었다고 한다.<sup>24)</sup> 일반적인 채용절차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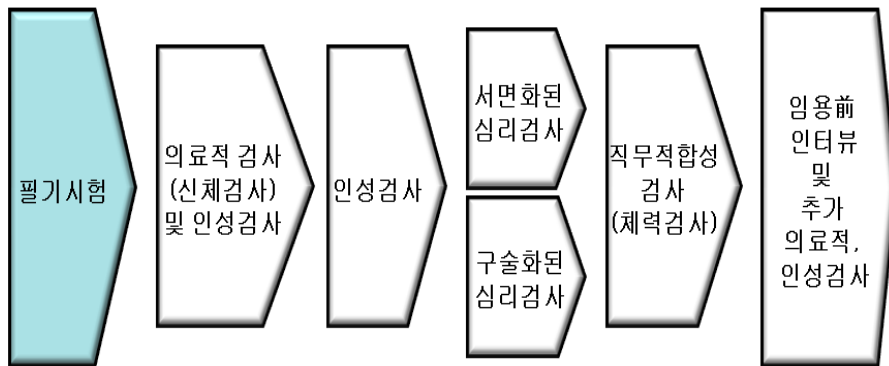
- ▶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공무원이 되기 위한 객관식으로 이뤄진 필기시험을 치르게 된다. 70%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지원자가 뉴욕시 거주자인 경우에는 필기시험 성적에 5점(five points-New City Residency Credit), 부모 중에서 뉴욕시 경찰관(소방관, 교도관) 등으로 근무 중에 순직한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10점(ten points-Legacy Credit)을 가점해준다.<sup>25)</sup> 필기시험 합격자 리스트가 시험주관부서(The Department of Citywide Administrative Services: DCAS)에서 뉴욕경찰청으로 송부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선발절차가 시작된다.
- ▶ 의료적 검사, 인성검사: 의학적 측면에서 검사진행, 60학점 이수증명, 군복무경력 증명, 중요한 인성검사, 지문감식이 진행된다. 신체 및 의료적 검사에 의한 불합격자를 선별한다. 그리고 인성평가에 부정적인 자를 찾아낸다.
- ▶ 인성검사: 조사관과 접촉, 제출서류들 검토, 서류를 제공하고, 문제점과 불일치한 점을 확인하고, 부정적 인성평가를 근거로 불합격을 결정한다.

24) <http://www.nyc.gov/html/nypd/html/chfpers/personnel/applicant-home.html>(2007년 4월 11일 검색)

25) <http://www.nyc.gov/html/dcas/downloads/pdf/noes/policeofficer601060116012.pdf>(2007년 4월 11일 검색)

- ▶ 서면화된 심리학적 검사: 서류된 표준화된 심리학적 테스트를 실시한다. 기준에 못 미치는 자를 탈락시킨다.
- ▶ 구술화된 심리검사 : 구두로 인터뷰를 실시한다. 기준에 못 미치는 자를 탈락시킨다.
- ▶ 경찰직 직무수행 적합성 검사 : 4분 28초 이내에 반드시 종료시켜야 할 체력검정 테스트(physical test)
- ▶ 임용前 인터뷰(면접)실시: 간단한 의료적 검사, 업데이트된 인성검사실시, 최근에 발생한 혹은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의료적 혹은 인성적 문제점을 발견한다.

<그림 2> 뉴욕경찰청 신규채용 절차 및 신체검사



뉴욕 경찰청의 경우, 인성검사, 심리검사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필기시험을 먼저 치르고 있다.

(2) 경찰직 지원자의 기본요건<sup>26)</sup>

① 필기시험에 지원 응시할 수 있는 기본조건들

지원 가능한 연령은 최소 17.5세 이상-35세 미만이어야 한다. 군대에서 35세 이상이 되도록 복무한 경험이 있는 지원자는 기준연령에서 6년을 감해줄 수 있다.

26) 이하 내용은 <http://www.nypd2.org/html/recruit/requirements.html>(2007년 4월 11일)을 참조한 것임.

## ② 임용될 당시에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

- ▷ 경찰관으로 임명될 당시에는 최소 21세 이상-35세 미만이어야 한다.
- ▷ 임명되기 직전 미국 市民權者이어야 한다.
- ▷ 임용직전 혹은 임용시 대학(2년 혹은 4년제)에서 평점 2.0이상으로 60학점을 이수했어야 한다.
- ▷ 만약 2년 이상 정규 군인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는 者는 명예전역자이며 고등학교 졸업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 지원자는 임용될 당시 뉴욕市 거주자 혹은 뉴욕시를 둘러싸고 있는 몇몇 카운티 중 (Suffolk, Westchester, Orange, Rockland, Nassau or Putnam Counties) 의 한곳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 ▷ 임용될 당시 유효한 뉴욕州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 신원조사의 일환으로, 지문감식을 위한 비용 7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 ▷ 지원자는 약물 및 알콜 복용 등에 대한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 ▷ 지원자는 성격(인성)검사 및 배경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 ③ 불합격사유들

다음과 같은 사유는 불합격판단의 기준이 되는 바,

- ▷ 1년 혹은 그 이상기간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前科)경력
- ▷ 법을 경시하고, 바람직스러운 도덕적 인성이 결여되었거나 폭력과 무질서적 성향을 의미하는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者
- ▷ 불량한 태도, 규칙 준수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하여 해고된 者
- ▷ 軍에서 불명예스럽게 전역한 자
- ▷ 경미한 절도범죄를 저질러 유죄선고를 받은 자
- ▷ 가정내 폭력으로 유죄선고받은 경험이 있는 자 등이다.
- ▷ 그리고 지원자가 모든 의료적, 신체적 검사 그리고 서류 및 구술로 이뤄진 심리학적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불합격될 수 있다.

### (3) 문신관련 뉴욕경찰의 기본 입장

뉴욕경찰청에서 문신관련 경찰직 지원자에 대한 구체적 처리방향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뉴욕 경찰관들 중에 문신한 사례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으며, 근무 중에 문신이 보이지 않도록 긴소매의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뉴욕시 지하철경찰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 가운데 왼쪽 팔에 문신한 관계로 긴 소매를 입은 한 젊은 경찰관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손목까지 내려오는 긴 소매로 된 경찰제복을 입은 경우는 문신한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뉴욕경찰청에서 신규경찰관을 채용할 시에 문신과 관련된 특별한 지침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 과거의 뉴욕경찰청 내부 지침(Rules & Procedures)에 따르면, 문신들은 감춰져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현재의 순찰경찰관 가이드북(The Patrol Guide)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뉴욕경찰청은 문신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갖고 있지 않으며, 많은 경찰관들이 긴소매를 입고 있다. 이것에 관하여 논쟁이 있는 바, 일부 언론에서는 문신을 금지하는 쪽으로 정책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찰노동조합에서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정복(제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동안에, 문신한 부분이 노출되어도 괜찮은 지에 대해서, 현재는 그렇다고 한다. 근무 중에 문신을 노출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 경찰청 지침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심지어 이러다간 “Jihad”라고 문신을 새긴 경찰관이 뉴욕에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sup>27)</sup>

## 2) 로스엔젤레스 경찰청

### (1) 로스엔젤레스 경찰청(LAPD)의 일반적 채용절차<sup>28)</sup>

로스엔젤레스 경찰청은<sup>29)</sup> 미국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경찰관서이다.<sup>30)</sup> 전체경찰관

27) <http://forums.officer.com/forums/archive/index.php/t-37176.html>(2007년 4월 11일 검색)

28) 이하 내용은 <http://www.joinlapd.com/selection.html>(2007년 4월 11일 검색)을 참조하였다.

29) <http://www.lapd.com/article.aspx?&a=3020>(2007년 4월 11일 검색)

30) 제일 큰 경찰관서는 뉴욕경찰청 그 다음으로 시카고경찰청이며, 로스엔젤레스 경찰청이 그 뒤를 잇는다.

은 약 9,500여명, 일반직원은 3,000여명에 이른다. 관할인구는 약 350만 명이다. 2007년 4월 현재, 경찰청장은 이전에 뉴욕경찰청장을 지내면서, CompStat 및 Zero-Tolerance Policing을 전개하면서 뉴욕의 범죄를 줄이고 치안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유명한 William Bratton이다.<sup>31)</sup> 同경찰청의 경찰관 채용절차는 대체로 8단계로 이뤄져 있다. 전반부에 필기시험이 치러지고, 신체검사(의료적 검사) 및 체력검사는 후반부에 실시되고 있다.

- ▶ 1단계: 온라인으로 신상명세서 작성(Preliminary Background Application: PBA) 및 경찰직 이해를 돕는 질문지에 답하기(Job Preview Questionnaire: JPQ)  
법집행관으로 채용되는 절차에 있어서, 同선발절차를 연기할 것인지 혹은 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원자의 배경과 신상에 관하여 문제들을 지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경찰직무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지 작성은 경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직무의 성질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sup>32)</sup>
- ▶ 2단계: 지원자의 능력을 검정하는 作文시험(Personal Qualification Essay; PQE)  
판단력, 의사결정, 행동의 유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제로 작문테스트를 실시한다. 지원자가 취득한 통과될 수 있는 점수에 따라서 경찰직 선발 적격자 명부 등재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여 낙방하게 되면, 3개월 후에 다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 ▶ 3단계: 체력검사(Physical Abilities Test: PAT)  
체력검사는 2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전반부는 근력, 민첩성, 지구력을 검정한다. 후반부는 에어로빅능력을 확인하는 바, 주로 의료적 검사(medical evaluation)시기에 실시한다. 이 검사는 당락(當落)여부(pass/fail)를 결정한다. 많은 지원자들이 同검사에 합격하기 위하여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개인적으로 준비한다.
- ▶ 4단계: 개인 신상에 대한 배경조사(신원조사, Background Investigation)

31) [http://en.wikipedia.org/wiki/Los\\_Angeles\\_Police\\_Department](http://en.wikipedia.org/wiki/Los_Angeles_Police_Department)(2007년 4월 11일 검색)

32) [http://lacity.org/per/psb/lapd\\_pbq\\_intro.htm](http://lacity.org/per/psb/lapd_pbq_intro.htm)(2007년 4월 11일 검색)

지원자는 개인의 이력에 관한 서류양식을 작성 제출한다. 지문조회, 추가적인 질문지에 답하기, 개인의 광범위한 이력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다. 개인신상 조사관의 면접이 있다. 고용경력, 경찰관련 기록, 재정적 기록, 교육경력, 군복무경력에 대해서 심도있는 조사가 진행된다. 가족구성원들, 이웃들, 직장의 상관 혹은 직장의 동료들 혹은 지원자의 친구들과의 인터뷰도 포함된다.

▶ 5단계: 거짓말탐지기 검사(Polygraph)

개인신원 조사 및 인터뷰과정에서 취득된 각종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실시된다.

▶ 6단계: 패널 심층인터뷰

지원자의 개인적 능력, 직업에 대한 동기, 지속적인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 인간관계기술,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패널로 구성된 해당부서의 면접(Department Interview)이 진행된다.

▶ 7단계: 의료적 검사(Medical Evaluation) 및 심리적 검사(Psychological Evaluation)

의료적 검사는 철저하다. 지원자가 경찰 직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서면화된 심리검사와 체력검사의 후반부 영역이 동시에 실시된다. 의료적 검사 및 평가에는 심리학적 평가가 포함된다.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경찰직무를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요소들에 관하여, 市당국에서 고용한 심리학자에 의하여 진행되는 개인적인 구두면접과 평가가 있게 된다. 평가되는 자료에는 개인배경 조사를 통하여 발견된 것 뿐만 아니라, 서면화된 심리학적 테스트들을 포함한다.

▶ 8단계: 자격을 부여하고(Certification) 임명하기(Appointment).

자격을 부여하고, 임명하고 그리고 임용前 중점 확인과정은 채용절차의 마지막 단계이다. 임용될 것으로 고려되기 위해서, 지원자는 모든 선발절차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지원자가 임용되는 시기는 다음 교육과정이 개설되는 시점에 달려있다.

&lt;그림 3&gt; 로스엔젤레스경찰청 신규채용 절차 및 신체검사



## (2) 경찰직 지원자의 기본요건

로스엔젤레스 경찰청 소속의 경찰관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다.<sup>33)</sup>

- ▶ 학력: 고등학교 졸업이상,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졸업자이어야 한다. 외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고등학교졸업자격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시민권자: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영주권자는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경찰직 채용과정에 지원하여, 필기시험 前에 시민권을 신청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시민권획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 로스엔젤레스 시내에 거주할 필요는 없다.
- ▶ 지원자의 배경 및 신상관련  
상세하게 조사된다. 비윤리적(파렴치한) 혹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 자는 채용될 수 없다. 지원자가 행했던 과거행위들과 선택들을 통하여, 경찰직 지원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해줄 수 있는 그리고 지원자의 인성에 관한 호의적인 면을 반영할 수 있

33) 이하 내용은 <http://www.joinlapd.com/qualifications.html>(2007년 4월 11일 검색)을 참조하였다.

는 긍정적인 소질들을 보여주어야 한다.

- ▶ 과거에 적법한 행위를 하였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 ▶ 정직과 성실성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어떤 서류에 관하여 허위 기재, 허위표현 혹은 누락시킨 것은 채용절차과정에서 엄격하게 확인 검사될 것이다.
- ▶ 로스엔젤레스라는 都市의 특징인 다양성에 관한 인식을 갖고,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가정폭력의 전력, 신체적 싸움 혹은 무례한, 모욕적인 혹은 다른 사람을 폭력적으로 대한 전력이 있다는 것은 자기통제력의 결핍, 협력할 의사가 없거나 혹은 협조할 능력이 없음 혹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마약과 알콜을 남용하고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 ▶ 이전의 고용경험과 軍복무 경험을 통하여, 경찰관으로서 성공하는 데 요구되는 동기와 성취의욕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 지원자의 재정적(財政的) 이력과 운전면허 기록을 통하여 책임있는 선택과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 (3) 문신관련 로스엔젤레스 경찰의 기본 입장

2003년 11월 로스엔젤레스 경찰청장인 William Bratton은 【특별명령 48호 (Special Order No. 48)】를 통하여, 노출되는 문신을 갖고 있는 경찰관들은 경찰청에서 승인하는 긴소매로 된 제복을 착용하거나 피부에 패치를 부착하여 문신이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sup>34)</sup>

로스엔젤레스 경찰청 인사담당(the LAPD's Personnel Group) 고위간부인 Bob Hansohn 경찰관(Commander)에 따르면, “몇몇 경찰관들은 자신들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문신은 자칫 일반시민들에게 非전문적인 경찰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로스엔젤레스 경찰노동조합에서는 경찰청의 이러한 조치가 너무 강하게 밀리나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찰노동조합 측에서는 문신에 대한 이러한 강한 제한조치를

34) <http://www.thefreelibrary.com/Cover+up-a0111899361>(2007년 4월 11일 검색)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인사담당 고위간부는 이 정책에 대한 변화가능성은 별로 있을 것 같지 않다고 한다.<sup>35)</sup>

한편, 지난 2005년 8월 22일자 Los Angeles Times라는 신문에 게재된 “법집행관들의 팔에 새겨진 문신은 이미지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Tattooed Arm of the Law Is Raising Image Questions”)”라는 제하의 기사는 로스엔젤레스 경찰청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경찰관서의 문신에 대한 방침의 일면을 알게 해준다.<sup>36)</sup>

### <표 2> Los Angeles Times 문신관련 중요기사

Michael Hartley라는 경찰관은 그가 18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문신을 했다. 그 당시 뉘시바늘 같은 것으로 찢어서 잉크를 삽입했었다. 그는 오른쪽 삼두근 부근에 토끼풀 모양의 문신과 열대지역의 꽃모양 그리고 왼쪽 팔까지 늘어지는 대나무모양의 문신을 포함하여 이제 8개의 문신을 갖고 있다. 그는 양쪽 팔, 왼쪽 다리, 등과 옆구리에도 문신을 갖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문신이 점점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다. 2003년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성인 6명 중 1명 정도는 문신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는 현재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Hartley의 상관인 Lee Baca 보안관을 포함하여, 전국의 많은 경찰관서의 책임자들과 카운티의 보안관들은 “현재의 법집행관들의 문신들은 시민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당해 법집행기관 소속의 제복 경찰관들이 일반시민들에게 문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관서의 책임자들과 보안관들에 따르면, 문신은 경찰관들과 범죄자들간의 경계선을 희미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부분적으로 문신은 갱단원들과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 가운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이다. 2003년 로스엔젤레스 경찰청장인 William Bratton은 9,000명이 넘는 소속 경찰관들에게 근무 중(on duty)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문신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라는 직무명령을 발한 바 있었다.

San Diego 경찰에서는 2004년도에 금지침을 따르기로 했으며, Houston경찰청장은 2005년도에 동금지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법집행기관 종사자들의 여론에 의하면, 그들의 나이 많은 상관들이 문신을 일종의 자기표현의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리고 갱단원들이나 범죄자들의 문화가 아닌, 그들의 문화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젊은 세대 경찰관들과 너무 동떨어져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이전에 軍에서 복무한 사람들과 오토바이 갱단원들과 같은 일탈행위를 일삼는 그룹들에게는 한때 문신이 주류를 이룬 적도 있었다.

35) <http://www.thefreelibrary.com/Cover+up-a0111899361>(2007년 4월 11일 검색)

36) Stuart Pfeifer(Times Staff Writer), “Tattooed Arm of the Law Is Raising Image Questions”, in: Los Angeles Times, Aug. 22, 2005. <http://www.lapd.com/article.aspx?&a=3020>(2007년 4월 11일 검색)

Hartley는 자신의 문신을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토끼풀 모양의 문신은 자신이 아일랜드의 후손이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한다. 그는 또한 더 많은 문신을 몸에 새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실 소속의 많은 경찰관들은 문신에 관한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다. 1990년 초반에, Lynwood Station 경찰서에 근무했던 몇몇 경찰관들이 자신들을 바이킹(Vikings)이라고 불렀으며, 거리에서 인종차별적이며, 인권침해적 행위에 관련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들 가운데 많은 경찰관들이 NFL의 Minnesota Vikings의 로고와 유사한 문신들을 하고 다녔다.

로스엔젤레스 경찰청(LAPD)에서는 그들 자신의 문신에 관한 문제를 갖고 있다. Rampart Division 지역경찰서 관내의 악명높은 반갱단인 CRASH 소속의 몇몇 경찰관들이 경찰에게 오명을 의심케하는 표지인 '악마의 눈을 한 채 무서운 모습으로 웃고 있는 해골모습'의 문신을 하였다.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인 Baca는 문신을 한 경찰관들로 하여금 근무 중에는 긴소매로 된 경찰제복을 의무적으로 착용토록하여 그 문신들이 보이지 않게 하는 내부 지침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그의 아이디어는 문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져가는 시점과 마주치고 있다. 심지어 자기의 상관인 Baca라는 보안관을 돕고있는 부보안관인 Paul Tanaka도 문신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다리에 바이킹 문신을 하고 있다. Lynwood 경찰서에 근무하였던, 마지막으로 관련된 경찰관이다. 그에 따르면, 바이킹(Vikings)은 그 경찰서에 근무하던 경찰관들의 별명(Nick-name)이었으며, 더 이상 어떤 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다.

Gardena의 시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Tanaka는 자신이 그러한 문신을 한 것을 여전히 후회한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오늘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 때에 알았다라면, 그 이름과 심벌이 악마와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다시는 그러한 문신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미국에서 각급 법집행기관에 대한 고문으로 일하는 Merrick Bobb가 말하기를 "Baca의 정책은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는 법집행기관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보안관실은 지속적으로 소속 요원들이 그러한 문신을 하지 않도록 설득시키고, 제지해야 한다. 비록 문신에 대한 그러한 방침이 절대적인 금지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내가 생각하기에 보안관이 매우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Baca라는 보안관 자신이 걱정하는 것은 그러한 문신들이 일반시민들에게 아주 나쁜 부정적인 인상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그의 참모는 그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노동조합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범위반 행위자로 인식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요원들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보안관실의 직원들은 아마도 300명이 넘는 요원들이 이러한 문신관련 정책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보안관실의 책임자인 Bill McSweeney에 따르면, 구치소에서 근무하는 보안관실 직원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문신을 한 그룹이라고 한다. 광범위하게 문신을 한 在所者들을 그동안 많이 봐왔다. 그 재소자들의 숫자에 맞먹는 많은 보안관실 직원들이 눈에 띄는 문신을 한 것을 보게 되니 무척 혼란스럽다....

Pico Rivera에 소재한 Johnny Casino라는 주인이 운영하는 문신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20여명의 보안관실 소속 직원들에게 문신을 해주었다고 한다. 약물중독자들이 오면, 문신을 시술할 장감이 없다고 말하며, 알콜중독자들이 오면 다른 업소로 돌려보낸다고 한다. 그렇지만 경찰관들에게 문신을 하는 것은 좋아한다고 하였다. 보안관실 직원들이나 경찰관들은 愛國的인 내용의 문신이나 자신들이 소속한 경찰관서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올해 39세의 Casino라는 문신시술자는.....왜 경찰관서에서 문신을 하는 경찰관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지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경찰관들이 문신을 한다고 갑자기 흉악범이 되는 것은 아니잖느냐? 라고 그는 말했다. 문신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일 뿐이다.....

Hartley라는 보안관실 경찰관은 남성구치소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문신에 관한 제안된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별로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한 문신노출 금지 정책이 시행되면, 심지어 로스엔젤레스의 무더운 날씨에도 긴팔 소매가 있는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한다.

“만약 당신이 25년 동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긴소매로 된 제복을 착용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무척 실망스럽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문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8월 달에 Palmdale 혹은 Lancaster에 있다고 생각해봐라.....”

경찰관들은 문신에 관한 규제조치에 도전할 만한 행운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지난 2005년 3월경에 Connecticut에 있는 연방판사는 Hartford에서 근무하고 있는 5명의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문신을 보이지 않게 강제하는 명령은 제1차 수정헌법상(1st Amendment)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訴訟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로스엔젤레스 경찰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서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로부터 노출되는 문신들에 대하여 경찰관서가 이를 금지하는 조치가 있는 후에, 仲裁法院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측이 패소했다(lost).

지금, 10여명의 로스엔젤레스 경찰관들이 그들의 문신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긴소매로 된 경찰제복을 착용하고 있다. 이 정책은 부분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경찰노동조합 관계자가 말한다. 왜냐하면, 로스엔젤레스 경찰청의 지침에 따르면, 긴소매의 경찰제복을 착용하는 경우, 반드시 넥타이를 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8월처럼 무더운 시기에는 긴소매와 함께 넥타이를 매고 근무하는 것이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로스엔젤레스 경찰노동조합장인 Bob Baker는, 몇몇 경찰관들이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것은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약 어떤 경찰관이 ‘나는 엄마를 사랑해(I love mom)’라는 내용의 문신을 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누구도 그것이 범죄나 불법적인 것이 될 만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노동조합장이 제시하기를....모든 문신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不法적인 문신들에 관해 금지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한다.

Baca처럼, 로스엔젤레스의 경찰관들은 시민들이 문신을 한 경찰관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고 Sharon Papa 次長이 언급했다. 그녀는 문신을 한 경찰관들에 관하여 수많은 불만이나 비판을 시민들로부터 접수받고 나서, 이러한 문신규제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지역공동체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문신은 범죄자적 행동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문신 때문에 겁을 먹고 있다”고 Papa차장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수많은 시민들로부터 불평과 불만을 접수해왔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러한 경찰관들은 갱단원들 만큼 많은 문신들을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시민들의 주장에 약간의 과장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봉사하는 시민들에게 위협적이거나 겁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Roy Burns라는 로스엔젤레스 보안관실 소속 경찰관들의 대표는 “소속직원들의 문신을 제한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보안관실이 노출되는 문신들을 갖고 있는 각 개인들을 법집행기관의 이미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그들의 문신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해당직원들에게 말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다.....30-4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여름 날씨에 긴팔 소매로 된 제복을 착용하고 직원들을 근무하게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이것은 우리가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법적 쟁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한다.....”

Fark와 Hartley는 말하기를 .... “보안관실의 최고책임자인 Baca가 부과한 지침이 어떤 것이던 간에, 비록 한 여름에 긴 팔 소매로 된 제복을 착용하게 될지라도.....이를 따를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문신을 좋아한다. 그리고 나의 직업을 좋아한다.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더라도 나는 할 것이다”라고 Hartley는 말했다.

미국사회에서 문신에 대한 인기가 증가하는 현상을 연구한 Boston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Sharlene Hesse-Biber는 경찰관들이 문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녀는 놀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것은 일종의 표시의 형태이다. 그 것은 중요한 정체감이다. 그것은 단체 구성원들의 연대감의 형태이며, 가시적인 참여의 한 형태이다.”

### 3) 스콧데일(Scottsdale) 경찰청의 문신규제 사례

경찰직에 고용되려고 하는 者는 외설스러운(obscene), 性的인, 인종차별적 혹은 종교적으로 차별적인 문신을 외부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과도하게 외부로 노출되는 문신들은 금지된다. 여기서 ‘과도하다’는 단어의 개념은 노출된 신체일부의 1/3을 덮고 있는 문신들 혹은 쇠골(collarbone) 윗부분에 보이는 문신 그리고 칼라가 있는 셔츠의 개방된 부분에서 보이는 문신을 의미한다.<sup>37)</sup>

경찰관서의 인사관리 담당 책임자는 노출된 문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문신에 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 채용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4) 샌디에고(San Diego) 경찰서의 문신경찰관 사례

샌디에고 경찰서에서 6년째 근무하고 있는 Anthony Reese라고 하는 경찰관은 오른쪽 팔뚝에 그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문신을 갖고 있다. 평소에 同경찰관은 문신 때문에 긴 소매의 경찰제복을 착용하고 있다. 날씨가 더워질 때에도 그 문신 때문에 짧은 소매의 반팔 근무복을 착용할 수 없다고 한다.<sup>38)</sup>

37) <http://www.ci.scottsdale.az.us/jobs/pd/tattoos.asp>(2006년 10월 19일 검색)

38) <http://www.signonsandiego.com/news/metro/20040714-2133-tattoo-staff.html> (2006년 10월 19일 검색)



여름철에도 긴소매의 경찰제복을 착용하고 있는 문신을 한 샌디에고 경찰관

한편, 샌디에고 경찰서의 Kristen Adams라는 경찰관은 수년 동안 문신 때문에 1,800시간 이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문신을 하지 않은 유일한 피부는 그의 머리와 손과 발바닥뿐이라고 한다. 한 때, 문신관련 잡지에 그의 문신내용이 소개되기도 했으며, 신체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償을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과도한” 문신을 갖고 있는 Adams라는 경찰관과 다른 몇몇 샌디에고 경찰관들은 근무시간에 늘 긴소매, 자켓, 스웨터 혹은 긴바지를 착용하면서, 그 문신을 가려야만 한다.

샌디에고 경찰서장인 William Landsdowne은 정복을 착용하는 경찰관과 정복을 착용하지 않는 경찰관들에게 기본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동서장은 적어도 경찰관이라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경찰관 이미지를 외부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하고 있었다.

“과도한” 문신이라는 의미는 노출된 신체의 30%이상이 문신으로 새겨지는 것을 뜻한다. 또한 목주위에서 관찰될 수 있는 외부의 어떠한 문신들이라도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 이러한 경찰관서의 기본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경찰관들은 경고(warning)에서 해임(termination)에 이르는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샌디에고 경찰서에 근무하는 2,100여명의 전체 경찰관 가운데, 과도한 문신을 하고 있는 경찰관은 4-5명 정도이다. 수 십명의 경찰관은 외부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도 괜찮은 수준의 제한된 문신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찰서의 정책으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Anthony Reese 경찰관 자신과 3명의 다른 경찰관들은 1년 내내 기후나 온도에 상관없이 긴 소매의 경찰제복을 착용하게 되었다. 올해 31세의 Adams라는 경찰관은 동부지구대에서 순찰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데, 대학 재학시절 처음 문신을 했다고 한다.

한편, 同경찰관의 언동에 따르면, Lansdowne경찰서장은 기자회견 때, 자신은 37년 동안 법집행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매일 긴소매의 경찰제복을 착용하고 넥타이를 매왔다고 하면서, 긴 소매의 제복을 착용해야하는 몇몇 경찰관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을 피력한 바 있다.

경찰서장은 최근 지역공동체의 모임에서 지역주민들에 의하여 제기한 민원들 때문에, 이 정책이 부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과도한 문신을 갖고 있는 경찰관들이 外部에 그 문신을 보임으로써, 일반 시민들은 그러한 문신을 한 경찰관들이 진짜 경찰관인지 여부를 경찰서에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한 문의 전화를 처리하기 위하여 샌디에고 경찰서에서는 경사급 경찰관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관들을 현장에 파견해야 할 상황도 있었다고 한다.

샌디에고 시민들은 샌디에고 경찰관들이 정말 품행이 방정하고 매우 전문적인 경찰관 이미지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 Adams라는 경찰관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진짜 경찰관인지 여부를 확인해 온 사람들은 없었다고 한다.

경찰서의 지침에 따르면, 피어싱, 낙인찍기와 흉터 만들기, 어떤 디자인을 하기 위하여 故意的으로 피부의 일부를 절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다른 지침에 따르면, 私服을 착용한 수사관, 비밀수사요원 그리고 높은 직책의 참모부서 직원들을 포함하여, 제복을 착용한 여자경찰관들은 양쪽 귀에 두 쌍 이상의 귀걸이를 착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제복을 착용한 여자경찰관들의 경우, 한 쌍의 장식용 귀걸이만 착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물론 남자 경찰관들은 귀걸이를 착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샌디에고 경찰서 노동조합장인 Farrar 경찰관의 언동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모든 문신들이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에서는 과도한 문신만 외관상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한다.

Reese라는 경찰관은 거의 6년 동안 샌디에고市 남동부 지구대에서만 근무하도록 강요 받고 있다고 한다. 32살의 同경찰관은 늘 긴 소매의 경찰제복을 착용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여름철만이라도 짧은 소매의 경찰제복을 입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한다. 비록 이러한 경찰서의 지침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同지침은 경찰

서장이 제시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경찰서장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한다.

한편, 이러한 금지규정은 비밀수사요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비경찰관, 제복을 착용하는 자원봉사자들과 경찰학교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적용된다. 예를 들면, 나찌를 상징하는卍와 같은 범죄적인 문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나체, 폭력, 명백히 性的인 것 혹은 저속한 그림 혹은 단어들을 담고 있는 문신들 역시 금지된다.

그 샌디에고 경찰서의 문신 등에 관한 정책은 인접한 보안관실(Sheriff's Department)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도 유사하다. 2,274명의 보안관실 소속 범집행공무원들은 짧은 소매로 된 정복을 착용했을 때, 어떤 문신이라도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러한 정책에 따르면, 보안관실 소속의 범집행관들의 얼굴, 목 혹은 머리에 어떠한 문신도 금지되고 있다.

그런데 인접한 지역에 소재한 대부분의 다른 경찰관서들은 이렇게 엄격한 문신제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관들로 하여금 용모가 단정하고(neat)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5) 휴스턴 경찰청(Houston Police Department)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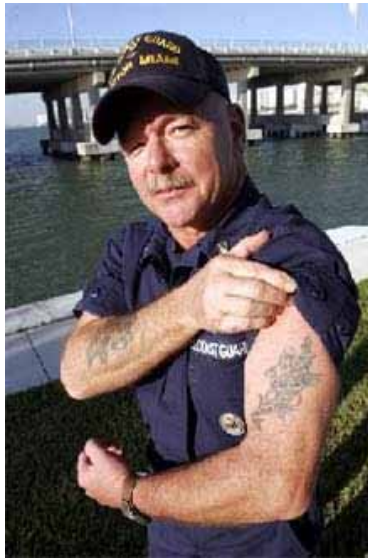
휴스턴市の 한 신문(Houston Chronicle)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sup>39)</sup> 2005년 1월 초부터 휴스턴 경찰청에 근무하는 모든 경찰관들은 경찰제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동안 어떠한 문신도 보이지 않도록 가려야 한다고 한다.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바, 예를 들면 자전거 순찰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만약 무릎 밑쪽에 문신을 하고 있다면, 여름철이라도 그들 역시 긴바지를 입어야 한다는 지시가 된다고 한다.

경찰청장인 Harold Hurtt가 신문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에 의하면, 그는 휴스턴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일반 시민들과 접촉할 때에, 전문 경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39) [http://www.inkedblog.com/archives/2005/07/houston\\_police\\_force\\_coverup\\_o.html](http://www.inkedblog.com/archives/2005/07/houston_police_force_coverup_o.html)  
(2006년 10월 19일 검색)



오른쪽 팔뚝에 문신을 한 휴스턴경찰관



문신을 한 미국의 해안경비대 소속 공무원

## 2. 영국경찰의 사례

### 1) 문신에 대한 일반적 규제

오늘날 영국에는 일반 성인들의 12%, 교도소나 다른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문신을 갖고 있다고 한다.<sup>40)</sup> 이처럼 문신은 고전적 예술의 한 형

태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에서는 1969년 【청소년의 문신에 관한 법(The Tattooing of Minors Act 1969)】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同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문신을 금지시키고 있다(prohibit).<sup>41)</sup> 비록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18세<sup>42)</sup>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문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문신을 시술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로서 처벌받게 된다.<sup>43)</sup> 즉 관련법령에 따르면, 위반자는 1,000파운드 이하의 罰金刑에 처할 수 있다.<sup>44)</sup>



BBC에 출연하여 문신에 관하여 인터뷰 한 영국 여성사례

40) <http://www.barrowbc.gov.uk/docs/TattooInfo.doc>(2006년 10월 19일 검색)

41) [http://www.devonline.gov.uk/index/information\\_and\\_services/environmental\\_health/eh-healthandsafety-intro/eh-hs-guidance/eh-hs-skin\\_piercing.htm](http://www.devonline.gov.uk/index/information_and_services/environmental_health/eh-healthandsafety-intro/eh-hs-guidance/eh-hs-skin_piercing.htm)(2006년 10월 19일 검색)

42) [http://www.sussex.police.uk/infocentre/text\\_version/content.asp?uid=256](http://www.sussex.police.uk/infocentre/text_version/content.asp?uid=256)(2006년 10월 19일 검색) 18세가 되면, 성인법정에 출정할 수 있으며, 부모의 동의없이 결혼할 수 있으며, 선거권을 갖는다.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으며, 모기지를 신청할 수 있다. 타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 스스로 문신을 할 수 있으며(You can get a tattoo), 술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실 수 있다.

43) <http://www.coventry.gov.uk/ccm/navigation/business/licensing-and-registration/personal-treatment-licences/>(2006년 10월 19일 검색): It is an offence to tattoo any person under the age of 18 years (the Tattooing of Minors Act 1969) regardless of parental consent; <http://www.eastbourne.gov.uk/business/licences/piercing> (2006년 10월 19일 검색): A person is guilty of an offence if he or she tattoos any person under the age of 18 years (the Tattooing of Minors Act 1969) regardless of parental consent. This would be dealt with by the police, not the council.

44) The penalty for this offence on summary conviction is a fine of up to £1,000.

한편, 특별한 의학적 사유(medical reason)가 있는 경우, 자격있는 의사나 그러한 사람의 지시 하에 일하고 있는 사람에 의하여 문신을 할 수 있다.<sup>45)</sup>

## 2) 런던수도경찰청의 문신관련 규제 사례

런던수도경찰청의 문신에 관한 기본 정책은 다음과 같다:

“신체의 어떤 부위이라도 文身이 새겨진 경찰직 지원자는 구체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며, 특히 얼굴, 팔(lower arm) 혹은 손에 새겨진 文身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문신의 量, Size, 개수에 상관없이 일반 시민들이나 동료경찰관들에게 무례한/유치한/외설스러운, 인종차별적, 性的인, 暴力的인, 공포감 조성적 혹은 협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문신은 신체의 어떠한 부위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sup>46)</sup>

이 뿐만 아니라 런던수도경찰청에서는 경찰관들의 화장(make up), 귀걸이착용, 헤어스타일, 피어싱(piercing),<sup>47)</sup> 히잡 및 터번착용(turban), 보석착용(눈에 띄지 않게 착용), 드레드 락(dreadlocks, 가늘게 뿔은 머리), 턱수염(beard) 등에 관해서 구체적 제한 및 금지규정을 정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허용되는 문신유형과 금지되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sup>48)</sup>

45) [http://www.sussex.police.uk/infocentre/text\\_version/content.asp?uid=258](http://www.sussex.police.uk/infocentre/text_version/content.asp?uid=258)(2006년 10월 19일 검색)

46) “Candidates with tattoos on any part of their body, and in particular on the face, hands or lower arms will be closely scrutinised. Any tattoo that is considered to be rude, lewd, crude, racist, sexist, homophobic, violent or intimidating will not be accepted wherever it appears on the body. Quantity and size - several tattoos or large or garish ones should continue to be considered with regard to the impression they may give to members or the public or colleagues”.

47) 영국정부는 2006년 8월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피어싱을 범죄행위로 규정할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피어싱을 시술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관련분야 종사자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브라질의 한 市의회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피어싱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프라임경제] 2006년 10월 19일(목) “배꼽 피어싱으로 여학생 사망”.....상파울로에서 92킬로 위치에 있는 소로까바 지역 市의회회는 부모나 책임자의 허가가 없이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피어싱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48) <http://metropolice.metafaq.com>: 2007년 5월 6일 검색.

<표 3> 영국런던 수도경찰청의 문신규제관련 내용

허용되는 문신유형(Acceptable)	허용되지 않는 문신유형들(Unacceptable)
영국의 국기(國旗) British/national flags	총기류(Guns)_
영국국기와 함께 있는 불독(Bull dogs with union flags)	피를 흘리는 혹은 핏방울이 있는 모습의 갈날(Daggers either covered in blood or dripping blood)
조류들(Birds)	나체상태의 여성/남성모습(Naked women/men)
화초류(Flowers)	무기류(Swords)
소용돌이(Scrolls with or without names)	어떤 형태의 무자비한 농기구(Grim reaper in any format)
군대의 뱃지 (Regimental badges or crests)	해골(Skulls)
축구클럽 뱃지(Football club badges)	사악한 마녀모습(Witches)
龍의 모습(Dragons)	군대조직 혹은 폭력조직과의 관련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문신들(Any tattoo that may have an association with paramilitary/violent organisations)
뱀의 모습(Snakes)	어떠한 종류의 폭력을 묘사하는 문신(Any tattoo which depicts violence of any kind)
사람의 이름(Peoples' names)	사무라이 戰士와 관련있는 검, 무기들(Samurai warriors brandishing swords)
피나 폭력을 묘사하지 않는 만화 캐릭터유형의 문신(Cartoon characters providing they do not depict blood or violence)	



드레드 락의 한 사례

### 3) 런던市(City of London) 경찰청의 사례

런던시 경찰에서는 경찰관 채용과 관련하여 지원요건 등을 인터넷상에서 홍보하고 있는 바, 특히 지원자의 문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있다.<sup>49)</sup>

순경급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요건들을 갖춰야 한다. 연령은 최소 지원당시 18.5세 이상 이어야 한다. 영국국적 혹은 영연방국가의 국적을 가져야 하며, 아일랜드 시민이어도 무방하며, 영국에 영주권을 가진 자도 가능하다. 문신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

경찰관은 자신의 존엄스러운 역할을 유지하면서, 좋은 인상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얼굴이나 손에 문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당신의 경찰관 지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야한 혹은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혹은 일반 공중으로부터 혹은 동료로부터 어떤 도발을 유발할 수 있는 혹은 공정성, 불편부당성 그리고 평등성에 기초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의심케 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충성심 혹은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떤 문신들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문신은 아래팔에 있는 문신은 항상 근무 중에 보이지 않도록 덮여져야 합니다.<sup>50)</sup>

### 4) 노스햄브리아경찰청(Northumbria Police)의 문신규제 사례

만 18세가 되어야 경찰직에 지원할 수 있으며, 경찰직 지원자는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문신을 갖고 있어서는 안된다.<sup>51)</sup> 예를 들면,

49) <http://www.cityoflondon.police.uk/recruitment/requirements.html>(2007년 2월 21일 검색)

50) Tattoos - Police Officers have to create good first impressions in keeping with the dignity(존엄) of the role. If you have a tattoo on your face or hands we cannot accept an application from you. Likewise any tattoos that are garish or could cause offence or invite provocation from members of the public or colleagues or display any allegiance or attitude which may give reason to doubt your ability to deliver a service based on fairness, impartiality and equality cannot be deemed acceptable. (Tattoos on lower arms must always be covered while on duty.)

51) <http://ww1.northumbria.police.uk/ePolicing/web/wms.nsf/AboutUsContentDocs/ABS000081?OpenDocument>(2006년 10월 19일 검색)

- ▷ 경찰직의 존엄성과 권위를 훼손하는 문신들,
- ▷ 야한(garish), 다수의 혹은 특별히 두드러진 문신들,
- ▷ 일반시민들 혹은 동료들에게 범죄를 야기 시킬 수 있는 혹은 도발을 야기할 수 있는 문신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무례한, 음란스러운(lewd), 야만적인, 인종차별적인, 性的인, 分派적인, 동성애적인, 폭력적인 혹은 협박적인 문신들과 여성들이나 소수자들 혹은 공동체의 다른 어떤 구성원들, 혹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특별한 그룹들과 연관된 사람들에 대하여 허용되지 않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문신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만약 지원자의 얼굴, 목, 팔뚝 혹은 손에 문신을 갖고 있다면, 경찰직에 지원할 시에 문신의 특징, 사용된 단어들, 넓이, 크기 그리고 문신의 위치에 관하여 설명해야 한다(should).<sup>52)</sup>

### 3. 캐나다 경찰의 사례

#### 1) 밴쿠버경찰청의 채용절차와 문신규제 동향

##### (1) 밴쿠버경찰청(VPD)의 일반적 채용절차

경찰청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찰직 지원자는 신규경찰관들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데 적합한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선발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 지원자들은 경찰청이 제공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모든 단계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지원자들은 브리티쉬-컬럼비아 법무연수원에서 개최되는 안내교육 과정에 참석해야 한다. 이곳에서 지원자들은 밴쿠버경찰청에 제출하는 각종 지원 서류들을 얻을 수 있다. 밴쿠버 경찰청의 경찰관 채용절차(Selection process)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sup>53)</sup>

52) [http://ww1.northumbria.police.uk/ePolicing/web/wms.nsf/AboutUsContentDocs/ABS000081?](http://ww1.northumbria.police.uk/ePolicing/web/wms.nsf/AboutUsContentDocs/ABS000081?OpenDocument)  
OpenDocument(2006년 10월 19일 검색)

### ▶ 필기시험

이 필기시험은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영어문법, 철자, 작문, 독해 그리고 수학으로 이뤄져 있다. 이 필기시험에는 또한 기억력에 근거한 부분과 짧은 작문으로 답하는 형식도 포함된다. 적어도 이 시험에서 65점은 취득하여야 하며, 이 시험을 마치는 데에는 약 2시간이 소요된다.

### ▶ 체력검사

지원자들은 2.4킬로미터(혹은 1.5마일) 거리를 12분 이내에 달려야 한다. 그리고 【경찰관을 위한 신체능력테스트(the Police Officer's Physical Abilities Test (POPAT))】를 4분 15초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손의 힘을 테스트하는 것과 무거운 짐을 끌어당기는 테스트가 이뤄진다.

### ▶ 심층인터뷰

이 단계에는 통합력, 문제해결능력, 다양성의 존중, 공동체 지향적 의식, 자기주도력 그리고 책임감의 인식 등에 초점을 맞춰, 지원자가 제출한 공개된 개인 설문지와 개인의 경력을 평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상세한 인터뷰에는 경찰활동에 대한 지원자의 이해와 왜 직업으로서 경찰을 선택했는 지에 관한 질문들이 포함된다.

### ▶ 거짓말탐지기 검사

이 검사에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대하여 훈련을 받은 자격있는 경사급 경찰관에 의한 인터뷰가 이뤄진다.

### ▶ 심리테스트

지원자들은 반드시 자격있는 경찰 심리학자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는 필기심리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53) <http://www.city.vancouver.bc.ca/police/recruiting/selection.htm>(2006년 10월 17일 검색)

### ▶ 평가본부

지원자들은 경찰직 수행과 관련이 있는 역할연기에 참가하게 된다. 심사요원으로 훈련을 받은 경찰관들이 관련내용을 기록하고, 각 지원자들의 행동과 기량들을 평가할 것이다.

### ▶ 채용부서 경찰관의 인터뷰

채용부서 경사급 경찰관은 각 지원들의 파일을 평가하고, 지원자들이 경찰직무 수행에 적합한 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원자들을 인터뷰할 것이다.

### ▶ 신체/의학적 검사

이 검사는 벤쿠버시와 계약을 맺은 의사(medical doctor)에 의하여 이뤄진다. 지원자들은 검사를 받기 전에 가정의에 의해서 작성된 의학적 검사사항들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시각적 예민성 검사도 또한 이뤄진다. 의학적 검사에 대한 비용은 지원자가 부담한다. 지원자의 신체검사 과정에서 문신여부 등에 대한 의학적 혹은 육안 검사가 이뤄진다.

### ▶ 배경조사

이 단계에서는 채용담당 부서 조사관이 지원자의 개인적 경력, 소질과 특성이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람들을 인터뷰하게 된다. 이러한 인터뷰를 위하여 접촉하는 사람들에는 현재 그리고 과거의 고용주, 직장 동료들, 가족구성원들, 오랜 친구들, 이웃, 집주인 등이 포함된다. 지원자의 파일을 평가하는 조사관은 최종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지원자를 선발, 유예 혹은 탈락시킬 것인 지를 권고할 것이다.

### ▶ 최종 선발된 者

선발절차의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그리고 채용되는 데 있어서 합격한 지원자들은 예비선발 경찰관으로서 선서를 하게 되며, 그 순간부터 급료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된다. 선발된 예비경찰관들은 벤쿠버경찰청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될 것이다.

## (2) 벤쿠버 경찰청의 문신에 관한 일반적 규제사항

원칙적으로 지원자가 문신을 했는지를 직접적으로 승격여부와 결부시키지는 않는다고 한다. 지원자가 문신을 했느냐 여부보다는 외부 露出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있다. 경찰관으로 근무 시 문신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 예를 들면, 正服이나 私服을 입었을 때, 문신이 노출(露出)되지 않은 가슴부위(chest)인 경우에는 규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목, 손, 팔뚝 등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부위의 문신은 내용과 형태를 불문하고 제거 혹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여름철에 짧은 소매의 유니폼(盛夏근무복)을 입을 경우, 팔뚝에 문신이 있다면, 문신을 제거하거나 혹은 긴팔 소매의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따라서 짧은 소매의 유니폼을 착용할 경우, 외부에 문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된다.<sup>54)</sup> 내부적으로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한편 채용담당(Recruiting Unit) 경찰관을 상대로 청취한 내용에 의하면, 본인 자신도 왼쪽 어깨 쪽에 작은 문신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외부에 전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고 있으며, 손, 목 주변, 팔뚝 등 노출된 부위에 문신이 있다면, 당연히 규제를 받는다고 한다.<sup>55)</sup>

문신을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외관상 노출된 부분에 문신이 새겨져 있다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 채용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문신관련 내용을 고지한다고 하며, 문신이 있는 지원자들은 종종 그것에 관하여 채용담당 부서에 문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同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채용담당 경찰관에 언동에 의하면, 문신과 관련하여, 2006년 7월까지 지원자가 訴訟이나 異議를 제기한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벤쿠버경찰청 관내에서 각종 범죄집단 내지는 hispanic, gang, 조직범죄단원들이 문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54) Larry Melnyk 경사와의 전화통화(2006년 7월 12일 오전 11:40분)를 거쳐서 청취한 내용이다.

55) 벤쿠버경찰청 채용담당 경찰관(Dave Montesano, 수사경찰관, 근무경력 17년)과 2006년 7월 19일에 대화한 내용이다.

### (3) 밴쿠버경찰청의 문신규제관련 법령

브리티쉬-콜럼비아주 밴쿠버시 경찰청(Vancouver Police Department)에서는 내부적으로 【규칙 및 절차규범(Regulation and Procedure Manual)】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同규범 가운데 문신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Section 40.16-Tattoos)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문신에 관한 기본지침(Policy)

경찰관의 외모(appearance)와 품행(deportment)은 밴쿠버 경찰청 관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그래서 경찰청 소속 구성원 각자의 전문가적 이미지를 발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목적을 위하여, 과도한 혹은 허가되지 않은 문신들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 ◎ 문신에 관한 기본절차(Procedure)

##### 1. 제 1조 개념정의

- a. 과도한(excessive) 문신: ‘과도하다’라는 의미는 노출된 신체 부위의 30%가 초과되는 문신 혹은 문신의 조합(collection), 목 부분이 개방된 유니폼을 착용하였을 때, 쇄골(collarbone)부분 위쪽에서 쉽게 보이는 그러한 문신들, 전문 직업 경찰관으로서의 적절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문신들로 정의된다.
- b. 금지된(허용되지 않은, unauthorized) 문신들: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부적절한, 직업윤리상 어긋나는 혹은 공격적인(예를 들면, 나체 혹은 폭력, 성적으로 노골적인 혹은 저속한 표현-그림, 단어들, 구절들 혹은 종교를 모독하는 언어) 것으로 판단되는 어떤 문신들로 개념 정의된다.

##### 제2조

문신을 새기려고 하는 者는 반드시(should) 경찰관서에서 제공하는 유니폼을 착용하였을 때, 가려질 수 있는 부분에 그 문신을 위치시켜야 한다.

제3조

유니폼을 착용한 경찰관들은 어떤 공적인 자격에서, 직무 수행중이거나 혹은 경찰관서를 대표하는 동안, 과도한 문신 혹은 금지된 문신들을 노출(display)시켜서는 안 된다. 과도한 혹은 금지된 문신들은 경찰관서에서 제공한 유니폼으로 가려져야 한다(must).

제4조

私服착용 부서 경찰관(수사경찰관)들은 어떤 공적인 자격에서, 직무수행중이거나 혹은 경찰관서를 대표하는 동안, 과도한 혹은 금지된 문신들을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과도한 혹은 금지된 문신들은 반드시 허용된 복장으로 가려져야 한다.

제5조

비밀수사업무(undercover assignment)를<sup>56)</sup>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은 이 규정에서 별도로 금지하지 않으면, 그 부서 상관의 허락을 받아서 문신을 노출시킬 수 있다(may display).<sup>57)</sup>

---

56) 위장 혹은 변장하여 비밀수사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일컫는다.

57) 同규정은 2006년 2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lt;표 4&gt; 밴쿠버경찰청 문신관련 【규칙 및 절차규범】

## Vancouver Police Department Regulation &amp; Procedures Manual

Part I Order-023  
Section 40.16- TattoosPOLICY

Appearance and deportment are factors that influence the community's confidence in the Vancouver Police Department.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each member of the Department project a professional image. To this end, the open display of excessive or unauthorized tattoos is prohibited.

PROCEDURE

## 1. DEFINITIONS

a. Excessive tattoos-excessive is defined as any tattoo or collection of tattoos that exceeds 30% of the exposed body part, those above the collarbone readily visible when wearing an open cooler uniform, and / or any which detract from an appropriate professional image.

b. Unauthorized tattoos - unauthorized is defined as any tattoo considered inappropriate, unprofessional or offensive (i. e. depictions of nudity or violence, sexually explicit or vulgar art, words, phrases or profane language).

2. Members wishing to obtain a tattoo should have of located in an area which can be covered with a Department approved uniform.
3. Uniformed members shall not display excessive or unauthorized tattoos while on duty or representing the Department in any official capacity. Excessive and / or unauthorized tattoos must be covered with approved clothing attire.
4. Plainclothes members shall mot display excessive or unauthorized tattoos while on duty or representing the Department in any official capacity. Excessive and/ or unauthorized tattoos must be covered with approved clothing attire.
5. Members of the Department in undercover assignments may display tattoos otherwise prohibited in this Section with the approval of their Inspector.

Effective (2006. 02. 23)

## 2) 최근 캐나다 연방정부의 문신관련 특이 동향

캐나다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이 私적으로 불법적으로 문신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불결한 혹은 오염된 도구를 사용하여, 에이즈, 간염 등 각종 전염성 질병들이 교도소내에 확산되고 있어서, 이들을 치료하는 데 비용이 더욱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수 년전 캐나다의 집권정당이었던 자유당 정부에서는 특별대책을 수립한 바 있었다. 이에 연방정부는 교도소 안에서 문신을 합법적으로 안전하게(safe) 시술할 수 있는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同시범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질병감염을 줄이고, 의료비용도 줄인다는 취지였다. 자유당 정부에서는 2005년 8월부터 58개 연방교도소들 가운데 6개소를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는 바, 문신을 새기는 데 재소자 1인당 5-15달러 정도씩 소요되었다고 한다. 이를 통하여 교도소내에서 1,043명이 문신시술을 받았다.<sup>58)</sup>

그런데 보수당이 執權하면서 同프로그램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者를 위한 문신시술에 납세자들의 귀중한 돈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2006년 12월 4일 공식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1년 동안 문신을 시술하는 데 60만달러(6억 4천만원)가 소요되었으며, 그 이전에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만해도 35만 달러나 되었다고 한다. 연방정부는 범죄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것에 납세자들의 돈을 쓰기로 하였다고 한다.<sup>59)</sup>

## 4. 독일 경찰의 사례

### - 연방경찰 및 바덴-뷔르템베르크州 경찰청 -

독일경찰에서는 신장, 연령, 기타 신체조건(문신 등) 대해서도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지원자의 문신과 관련해서는 연방경찰의 경우, 아예 경찰관채용관련 안내책자에서 문신(Taeto-wierung)과 피어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 州경찰에서는 신체검사와 관련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문신을 한

58) Vancouver Sun Dec. 05, 2006.

59) [http://www.conservative.ca/EN/1091/61832\(2007년 2월 21일 검색\): Canada's New Government ends tattoo program for convicted criminals December 04, 2006.](http://www.conservative.ca/EN/1091/61832(2007년_2월_21일_검색):_Canada's_New_Government_ends_tattoo_program_for_convicted_criminals_December_04,_2006)

경찰직 지원자의 쟁송사례 등이 소개되고 있다.

## 1) 연방경찰의 채용절차와 신체검사 관련 동향

### (1) 지원자격 개요

순경급 경찰관 채용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60)</sup>

- ▷ 학력은 상업 혹은 직업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한다.
- ▷ 연령은 16세 이상 24세 미만이어야 한다.<sup>61)</sup>
- ▷ 신체적 조건과 관련, 신장은 계급 구분없이 남성은 165cm이상, 여성은 163cm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최장 195cm이하이어야 한다.
- ▷ 독일국적자이거나 혹은 유럽연합소속 국가의 국적을 가져야 한다.
- ▷ 언제든지 독일연방공화국 헌법상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신봉하여야 한다.
- ▷ 경찰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경찰 직무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 ▷ 경찰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할 정도의 인격 및 정신상태(geistige Eignung)를 갖고 있어야 한다.
- ▷ B 등급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예외, 경찰학교 졸업시까지 운전면허 취득해야 함).
- ▷ 외관상 눈에 띄만한 문신과 눈에 띄만한 피어싱이 없어야 한다.<sup>62)</sup>

60) [http://www.bundespolizei.de/nn\\_484490/DE/Home/05\\_\\_Berufsperspektiven/beruf\\_\\_mit\\_\\_kunft,templateId=raw,property=publicationFile.pdf/beruf\\_mit\\_zukunft.pdf](http://www.bundespolizei.de/nn_484490/DE/Home/05__Berufsperspektiven/beruf__mit__zu-kunft,templateId=raw,property=publicationFile.pdf/beruf_mit_zukunft.pdf)(2007년 3월 2일 검색)

61) 경위급 이상(경찰대학생선발)의 경우는 연령은 31세 미만이며, 학력은 인문계고등학교(Gymnasium) 혹은 전문대학(Fachhochschulreife)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한다.

62) 독일연방경찰청 경찰직 소개 책자 가운데, 경찰직 지원조건 안내내용 참조(p.8) [http://www.bundespolizei.de/nn\\_484490/DE/Home/05\\_\\_Berufsperspektiven/infobroschuere\\_\\_beruf\\_\\_mit\\_\\_zukunft,templateId=raw,property=publicationFile.pdf/infobroschuere\\_beruf\\_mit\\_zukunft.pdf](http://www.bundespolizei.de/nn_484490/DE/Home/05__Berufsperspektiven/infobroschuere__beruf__mit__zukunft,templateId=raw,property=publicationFile.pdf/infobroschuere_beruf_mit_zukunft.pdf)(2006년 11월 15일 검색)

(Keine sichtbaren Taetowierungen und kein sichtbares Piercing)

- ▷ 前科경력이 없어야 한다.
- ▷ 경제적 거래관계가 건전해야 한다(Geordnete wirtschaftliche Ver- haeltnisse)
- ▷ 수영을 할 수 있는 능력 증명을 포함하여, 신체적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
- ▷ 연방전역에 배치되어 근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 적합성여부를 판정하는 절차(채용절차)에 성공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선발된 예비경찰관은 30개월 동안 신규임용교육을 받게 된다. 한편 경찰대학생으로 선발되면 36개월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 (2) 선발절차 개요

선발절차(Eignungsauswahlverfahren: EAV)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바, 필기시험, 경찰의사에 의한 신체검사, 체력검사(sporttest), 구두시험(면접, muendliche Testverfahren) 등이다.<sup>63)</sup> 순경급 경찰관 채용절차는 이틀간에 걸쳐 실시되지만, 경찰대학생 선발과정은 4일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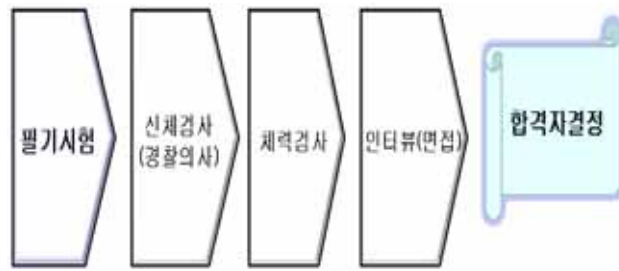
첫 번째 단계(이틀 동안)에서는 필기시험(知的능력, 간단한 작문)을 치른다. 그리고 경찰의사에 의한 신체검사(polizeiärztliche Unter- suchung)를 받는다.

1단계에서 긍정적인 결과(positive Ergebnis)를 얻은 지원자에 대해서, 두 번째 단계(이틀 동안)의 선발절차가 진행되는 바, 사회성, 체력검사 및 인터뷰(그룹토의, 간단한 특별연설, 인터뷰 등)등이 이뤄진다.<sup>64)</sup>

63) [http://www.bundespolizei.de/nn\\_484490/DE/Home/05\\_\\_Berufsperspektiven/EAV/eav\\_\\_node.html\\_\\_nn=true](http://www.bundespolizei.de/nn_484490/DE/Home/05__Berufsperspektiven/EAV/eav__node.html__nn=true)(2007년 3월 2일 검색)

64) [http://www.bundespolizei.de/nn\\_484490/DE/Home/05\\_\\_Berufsperspektiven/EAV/eav\\_\\_node.html\\_\\_nn=true](http://www.bundespolizei.de/nn_484490/DE/Home/05__Berufsperspektiven/EAV/eav__node.html__nn=true)(2007년 3월 2일 검색)

&lt;그림 4&gt; 독일 연방경찰의 선발절차 개요



## 2)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경찰의 채용절차

본항에서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경찰의<sup>65)</sup> 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 (1) 지원조건 개요<sup>66)</sup>

- ▷ 법률과 충돌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처벌될만한 행위를 의미).
- ▷ 독일 기본법 제116조가 규정하고 있는 독일국민이어야 한다(非독일시민의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 ▷ 독일 기본법(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신봉하고 있어야 한다.
- ▷ 신체조건으로서, 남녀 불문하고 최소 160cm이상이어야 한다.
- ▷ 신체적인 적합성과 양호한 건강상태이어야 한다(Körperliche Fitness, guter Gesundheitszustand).

순경급 경찰관 채용의 경우, 학력은 실업학교 혹은 중등학교(5-9학년) 이상의 졸업학력을 가져야 한다. 연령은 16.5세 이상 30세 이하이다. B 등급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운전면허 없으면 교육기간 중 自費로 취득해야 한다).

경찰대학 선발의 경우, 학력은 대학입학자격시험(Abitur) 혹은 전문대학 졸업이상이어

65) <http://www.polizei-bw.de/>(2007년 3월 2일 검색). 同州의 인구는 10,470,000명, 면적은 35,753km<sup>2</sup>, 경찰관 24,600여명, 일반직원 7,200여명 정도이다.

66) [http://www.polizei-bw.de/beruf/berufsinfo/index\\_1.htm](http://www.polizei-bw.de/beruf/berufsinfo/index_1.htm)(2007년 3월 2일 검색)

한다. 지원시 연령은 최고 31세까지이다(예외 가능). B 등급의 운전면허 소지해야 한다 (Der Besitz der Fahrerlaubnisklasse B ist Einstellungsvoraussetzung).

## (2) 선발절차 개요

경찰관 선발관련 절차는 州경찰의 기동경찰본부(Goepfingen) 및 지역대(Lahr)에서 각각 실시된다.<sup>67)</sup>

필기시험, 체력검사,<sup>68)</sup> 경찰의사에 의한 신체검사, 인터뷰 순으로 이들 동안 진행된다. 필기시험에는 받아쓰기, 언어이해력 테스트, 컴퓨터를 이용한 지능테스트 등이 이뤄진다. 경찰의사에 의한 신체검사는 주로 건강상태 및 신체적인 적합성 검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심장, 신장(Nieren)검사, 시력검사, 체중, 신장, 청력검사가 이뤄진다.

## 3) 독일경찰의 신체검사 및 문신규제 관련 법령

경찰관 선발과정에서 신체검사시에 경찰의사(aerztliche Untersuchung)에 의하여 중점적, 정밀하게 다루어진다. 다음 내용은 경찰관 선발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州 Goepfingen에 소재한 기동경찰본부 담당경찰관(경정급)과의<sup>69)</sup>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 (1) 경찰관의 외모 및 문신관련 법령 개요

#### ① 경찰관의 외모 및 일반적 태도에 관한 규정

바덴-뷔르템베르크 州경찰의 복무규정 (Polizeidienstvorschrift) 【PDV 350】 제 3절 『경찰관의 일반적 태도(Abschnitt III. Allgemeines Verhalten)』10조 이하에서는 경찰관의 외모(Erscheinungsbild)와 태도(Auftreten)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67) [http://www.polizei-bw.de/beruf/berufsinfo/index\\_1.htm](http://www.polizei-bw.de/beruf/berufsinfo/index_1.htm)(2007년 3월 2일 검색)

68) 2007년 9월 1일부터 순경급 경찰관 선발시, 필기시험 후 곧바로 체력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69) Frau Christen Bracke(女, Polizeiratin, 경정급 경찰간부)

10조: 外的으로 나타나는 경찰관의 외모는 공공관계 속에서 경찰관의 특별한 지위와 명망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양호한 태도(몸가짐, gute Haltung), 교양있는 외모(gepflegtes Aeusseres) 그리고 올바른 복장(korrekte Kleidung)에 특별한 가치가 부여되어야 한다.

(§10: Das aeussere Erscheinungsbild des Polizeibeamten muss der besonderen Stellung und dem Ansehen der Polizei in der Oeffentlichkeit gerechtet werden. Auf gute Haltung, gepflegtes Aeusseres und korrekte Kleidung ist daher besondere Wert zu legen.)

## ② 문신과 관련된 신체검사 규정

바덴-뷔르템베르크 州경찰의 복무규정(Polizeidienstvorschrift) 【PDV 300: 경찰 직무 적합성 및 경찰직무 수행능력에 관한 의료적 판단】<sup>70)</sup>을 통하여, 경찰관 및 지원자의 신체검사(Untersuchung des Koerpers und seiner Organe)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내분비 시스템, 신진대사(물질대사)질병, 혈액관련 질병, 피부, 골격시스템(동작기관), 눈, 귀, 구강, 목구멍, 순환기관, 호흡기관, 복부의 내장 및 생식기, 심리학적 태도 및 신경계통 등이다.

특히 신체검사이시 지원자의 문신에 대한 부분은 제3조 피부(Haut)에 관한 내용이다. 피부에 결함이 있을 시 해당자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 및 경찰직무 적합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제3조 피부(Haut) 1항

피부는 깨끗하고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 피부의 질병성 변화들은 그것의 의미 혹은 예측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숙박하는 곳에서 함께 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는 요인을 야기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보균자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심각한 피부질환이 있는 지원자는(예를 들면, 청소년기의 확산된 여드름, 세균감염) 그런 이유에서 우선 성공적인 치료여부에 대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피부와 눈에 보이

70) PDV 300 - Ärztliche Beurteilung der Polizeidiensttauglichkeit und Polizeidienstfähigkeit (Ausgabe 1999)

는 피부점막을 살펴봄으로써, 다른 신체기관의 질병에 대한 의심이 밝혀진다. 그래서 적절한 신체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신들은 반드시 기록하고, 서면화되어야 한다. (경찰직)지원자 선발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는 문신을 갖고 있는 지원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 평가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발절차 및 임용절차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원문: § 3 3.1 Haut: Die Haut soll rein und elastisch sein. Krankhafte Veraenderungen der Haut stellen unabhaengig von ihrer Bedeutung oder Prognose einen Stoerfaktor beim Zusammenleben in der Gemeinschaftsunterkunft dar und wirken sich dadurch fuer den Traeger psychisch belastend aus.

Bewerber mit akuten Hautkrankenheiten(z. B. ausgedehnte Akne juvenilis, Mykose) sollen daher erst nach erfolg- reicher Behandlung beurteilt werden. Ergibt sich beim Be- trachten der Haut und der sichtbaren Schleimhaeute der Verdacht auf Krankheiten anderer Organe, so sind ent- sprechende Untersuchungen durchzufuehren.

Taetowierungen sind zu beschreiben und zu dokumen- tieren. Die fuer die Personalauswahlentscheidung zustaen- dige Stelle ist auf Bewerber mit Taetowierung hinzuweisen. Die Bewertung erfolgt nicht durch den Arzt, sondern im Rahmen des Auswahl- und Einstellungsverfahrens.)

## (2)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경찰의 문신관련 기준

### ① 기본원칙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경찰의 신규채용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州기동경찰국에서는 1998년 3월에 公文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문신에 관한 기본원칙을 표명한 바 있다.<sup>71)</sup>

盛夏근무복을<sup>72)</sup> 착용했을 때에도 문신이 감춰진다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71) Sofortinformation 3/98 des BPP an die Referate/Stabsbereiche Oeffentlichkeitsarbeit der Polizei Baden-Wuerttemberg 참조.

72) 독일 경찰의 성하(盛夏)근무복은 우리나라처럼 반팔이다. 즉 반팔 근무복을 착용했을 때 문신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면 문제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신들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갖고 있는 문신이 현존하는 刑法이나 질서위반법에 저촉되거나
- 다른 사람의 명예 감정이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
- 단어나 그림에서 정치적인 내용, 즉 세계관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을 때.

<표 5> 바덴-뷔르템베르크州 경찰의 문신관련 대외 공문서

<b>Referat Ö</b> Az.: Sb.:Lewcke	Göppingen, 15. 06. 2004 Tel.(07161) 616-1040
<b>Aktenvermerk(공문서 공지)</b>	
<b>Taetowierungen(문신)</b>	
<p>부여된 기회로부터, 문신의 제거가 부담으로서 다루어져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 때문에, 문신의 제거는 8주간의 기한이 넘지 않도록 직접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가 자신의 문신을 완전히 제거할 것이라는 서약서에 서명하는 경우에, 관련된 승인이 비로소 부여될 수 있다. 문신을 처리함에 있어서, 교육기간 중에 문신이 제거될 수 있어야 하는 바, 임용기간前에 시작되어야 한다.</p> <p>문신처리 결과에 대한 적절한 증명들이 경찰관채용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p> <p>경우에 따라서는 교육기간 중에 문신처리가 종결되었음을 해당부서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p> <p>지금까지의 규정상 권한에 따르면, 어떤 문신들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어떤 문신들에 대해서는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 지는 기동경찰국 해당부서 책임자의 판단영역에서 존재해왔다. 성하근무복을 착용했을 때, 문신이 가려진다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신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갖고 있는 문신이 現存하는 刑法이나 질서위반법에 저촉되거나</li> <li>- 다른 사람의 명예 감정이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li> <li>- 단어나 그림에서 정치적인 내용, 즉 세계관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을 때.</li> </ul> <p>경찰의사의 진찰을 통하여, 문신들의 크기, 위치 그리고 문신을 하게 된 동기 등에 대해서 기록해두어야 한다. 문신에 관해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부서의 책임자에게 기록들이 제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적인 부담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문신을 사진촬영하고 서면화시켜야 하는 바, 이에선 지원자의 문서로 된(schriftlich) 동의서가 필요하다.</p>	
-----	
Name, Vorname(성명)	Datum(날짜)

②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문신들

옷을 입었을 때, 보이지 않는 신체상의 문신(verdeckte Taetowierung)도 규제되는 바, 刑法에 저촉될 수 있는 내용(strafrechtliche), 도덕적으로(moralische) 문제시될 수 있는 내용, 外國人에게 적대적인 내용(fremdefeindliche), 性的인 표현(sexuelle), 악마(마귀, 사탄 등, Teufel)관련 내용, 종교적으로(religioese) 위반될 만한 내용 등은 금지된다. 의사에 의하여 신체검사시에 문신은 정밀하게 체크되며, 이와 관련되어 지원자가 배제될 수 있다(entfernen kan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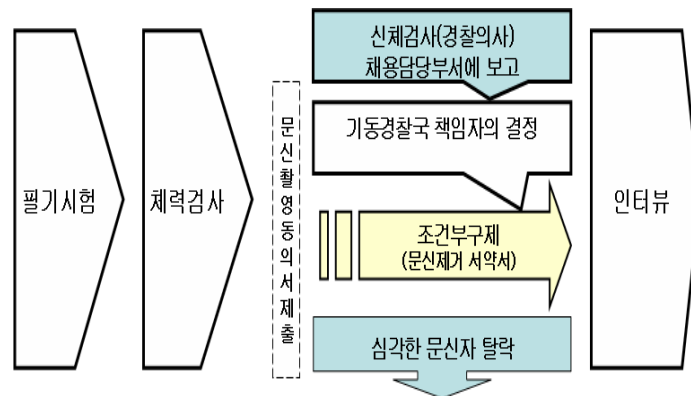
신체검사시 문신을 한 지원자에 대해서, 채용절차를 맡고 있는 부서의 경찰책임자(von der Polizeileiter)는<sup>73)</sup> 구두로 (mundlich) 혹은 문서로(schriftlich) 경고할 수 있다 (vereinwarnung).

(3) 신체검사 절차와 문신관련자에 대한 조치

① 채용절차와 문신검사

채용절차과정(Auswahlverfahren)은 이틀 동안에 필기시험→ 체력검사→신체검사→ 인터뷰 順으로 진행된다.

<그림 5> 채용절차와 문신관련자 조치 절차



73) 바덴-뷔르템베르크주경찰의 기동경찰대 지역대장(5개 지역)은 총경에서 경무관급 정도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 ▶ 신체검사시 문신을 한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의사(go to doctor)가 육안으로 검사하고(sees tattoo and body check),
- ▶ 지원자로부터 문신에 대한 사진촬영 및 문신평가를 위해서 자기 사진들이 활용되어도 괜찮다는 동의서(Einverstaendniserklaerung)를 작성, 제출받는다.

<표 6> 독일경찰의 문신촬영 동의서 양식

**Einverstaendniserklaerung (문신촬영동의서)**

- Taetowierung/en(문신) -

저는 신체검사를 담당한 경찰의사를 통하여, 제가 갖고 있는 문신들에 관하여 많은 사진(즉석 사진)을 촬영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서류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 사진들이 선발절차 및 임용절차의 영역에서, 권한 있는 기동경찰부서의 책임자에 의하여 혹은 부책임자에 의하여 살펴보게 되며, 평가되어진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Hiermit erkläre ich mich einverstanden, dass meine Taetowierung/en durch den unterstehenden Polizeiarzt/Polizeiaerztin anhand einer bzw. wenn noetig mehrerer Fotografie/n(Polaroid-Bild/er) dokumentiert wird/werden

Darueberhinaus bin ich damit einverstanden, dass diese/s Bild/er durch den Leiter der zustaeendigen Bereitschaftspolizeiabteilung oder seines Vertreters im Rahmen des Auswahl- und Einstellungsverfahrens angeschaut und bewertet wird/werden.)

(담당부서 공무원 서명란) (지원자의 서명란)

Ort, Datum Name, Vorname(Unterschrift)

des Bewerbers/der Bewerberin

Bewertung des/der vorgelegten Bilders/r durch den Leiter der zustaeendigen Bereitschaftspolizeiabteilung bzw. seines vertre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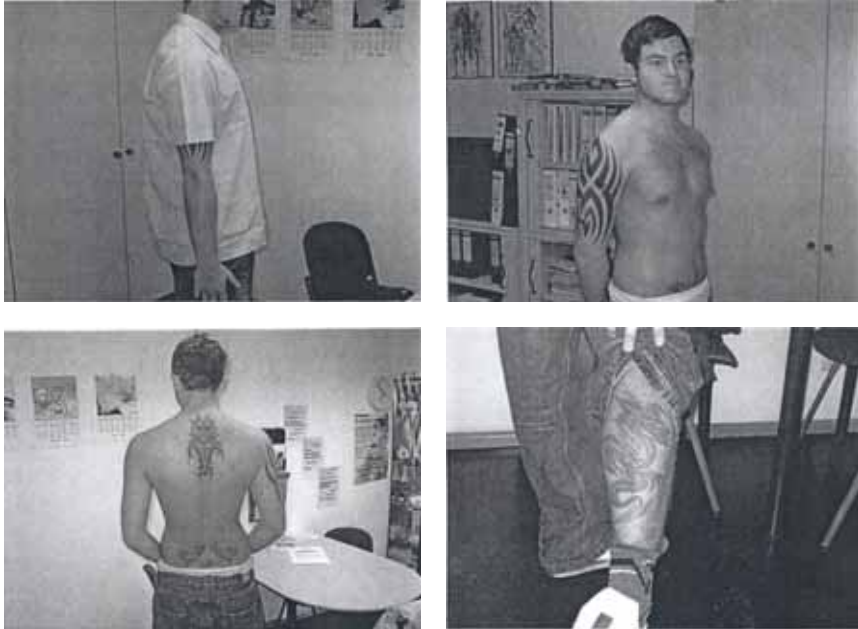
(문신촬영된 사진을 보고 인사부서 책임자가 평가하는 내용)

(합격 혹은 불합격 취지의 내용을 기재함: 탈락/조건부구제)

Datum, Unterschrift des Abteilungsfuehrers oder Vertreters im Amt

담당부서 책임자(혹은 부책임자)의 서명란

- ▶ 의사는 관련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한다(사진내용 첨부). 이때 신체검사를 맡은 경찰 의사는 지원자의 문신이 새겨져 있는 신체부위에 대해서 정밀하게 사진을 촬영하고,



문신을 한 독일경찰 지원자의 신체를 촬영한 모습

- ▶ 그리고 담당의사는 【경찰직무 적합성 및 경찰직무수행 능력에 관한 의료적 판단규정】에<sup>74)</sup> 의거, 경찰의사에 의하여 선발관련 신체검사가 실시되었음을 보고하는 문서-□□경찰직무적합성 판단을 위한 경찰의사에 의한 신체검사서□□<sup>75)</sup>-를 작성하여 당일 경찰담당부서에 제출된다.
- ▶ 채용담당 부서의 책임자(혹은 부책임자)는 적합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를 決定할 때, 위원회가 아닌(no Kommission), 부서 책임자(Leiter)가 단독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decide by himself).<sup>76)</sup>

74) 독일 경찰에서는 관련 법령을 운영하고 있는 바, 【경찰직무규정(Allgemeine Dienstvorschrift fuer den Polizeivollzugsdienst-PDV- des Landes B.-W.)】이다. 同법령 PDV 300조 이하에서 “경찰직무 적합성 및 직무수행능력에 관한 의료적 판단 규정”이 있다.

75) □□Polizeiaeztliche Auswahluntersuchung zur Beurteilung der Polizeidiensttauglichkeit.』

76) 바덴-뷔르템베르크 州경찰에서는 경찰관채용 및 선발절차가 기동경찰 2개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 부서의 책임자가 문신관련 내용을 처리할 때에는 다른 부서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

결정은 문신을 한 지원자를 선발절차 단계에서 거부하는 경우(ablehnen, Not O.K.)와 경찰관으로 채용되었을 시 自費로 제거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고, 신체검사에서 합격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된 두 가지 사례의 공문서를 소개한다.

②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처리하는 경우

“.....귀하는 금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경찰에 선발되기 위한 시험에 참가 하였습니다. 경찰醫師의 신체검사 결과에 따르면, 신체상의 필요한 전제조건들이 귀하에게는 부여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경찰직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표 7> 신체검사결과 不合格 처리된 경우 공문서

<p><b>Bereitschaftspolizeiabteilung Goepingen</b></p> <p>(기동경찰국 Goepingen 지역대)</p> <p>Goepingen. 19.07.2004 Herr Thomas Mueller Heiderstr. 80 74644 Aalen</p> <p>존경하는 Herr Mueller씨</p> <p>하는 금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경찰에 선발되기 위한 시험에 참가하였습니다. 경찰醫師의 신체검사결과에 따르면, 필요한 신체상의 전제조건들이 귀하에게는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경찰직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p> <p>귀하의 개인적인 서류들은 돌려드립니다. 귀하의 미래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p> <p>Sehr geehrter Herr Mueller,</p> <p>Sie haben heute an der Pruefung fuer die Einstellung in den Polizeivollzugsdienst des Landes Baden-Wuerttemberg teilgenommen. Nach dem Ergebnis der polizeiaerztlichen Untersuchung sind bei Ihnen die geforderten koerperlichen Voraussetzungen nicht gegeben. Eine Einstellung is somit nicht moeglich. Ihre persoenlichen Unterlagen erhalten Sie anbei zurueck. Fuer die Zukunft wuenschen Ihnen alles Gute.</p> <p>Mit freundlichen Gruessen</p> <p>-----</p> <p>담당경찰관 서명</p>
--

여 상의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결정은 독자적으로 한다.

③ 신체검사 합격후 自費로 문신제거 할 경우

“.....본인이 2002년 3월 1일자로 중급직 경찰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저의 문신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조건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 받았습니다. 또한 임용되고 나서라도, 저의 문신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은 저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표 8> 문신한 지원자의 서약서 작성양식

<p><b>Erklaerung(서약서)</b></p> <p>본인이 2002년 3월 1일자로 중급직 경찰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저의 문신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조건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 받았습니다. 또한 임용되고 나서라도, 저의 문신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은 저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p> <p>(Ich wurde darauf hingewiesen, dass meine Einstellung in den mittleren Polizeivollzugsdienst zum 1. Maerz 2002 nur unter der Massgabe einer vollstaendigen Entfernung meiner Taetowierung erfolgt ist. Ich verpflichte mich, die Behandlung zur Entfernung meiner Taeto- wierung auch nach meiner Einstellung auf eigene Kosten fortzusetzen.)</p> <p>-----</p> <p>(지원자의 서명) Unterschrift Bewerber</p>
--

4) 용모복장 및 문신관련 판례 사례

(1) 경찰관 용모복장 등과 관련된 판례동향

- ▶ 1994년 3월 연방행정법원 2부(Der 2. Senat des BVerwG)에서는 경찰관들의 용모복장에 관하여 판결을 내린 바 있다.<sup>77)</sup> 해당부서의 근무책임자는 실질적인 근

77) Az.: 2 B 33/94 bei Buchholz 237.7 §58 NWLBG Nr. 1(ST).

거에 따라서 해당공무원의 외모에 관해서 지시(손톱을 짧게 깎아라, 머리를 짧게 잘라라, 귀걸이 혹은 이목을 끄는 반지를 끼지 마라 등)를發할 수 있다.

- ▶ 연방행정법원(BVerwG)은 1999년 1월 15일에 판결한 내용을 통하여, 규칙제정권에 관하여, 바이에른州 최상급관청 단독으로 制服을 착용한 공무원들의 외모에 대해서 어떤 명령(Anordnungen)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일반적(generell)이고 통일적으로(einheitlich)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하급관청들에게는 귀걸이(Ohrschnuck, 귀장신구) 그리고 긴 머리(lange Haartracht)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

## (2) 문신관련 판례 사례

### ① 선발된 경찰교육생 사례

본항에서 소개할 판례는 2002년 2월 14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 행정법원의 판결(경찰직을 위한 문신과 적합성판단)이다.<sup>78)</sup> 원고는 당시 Hessen州 경찰대학교에 지원한 者였으며, 이탈리아국적의 유럽연합 국가의 일원이었다. 계류 중인 행정쟁송절차에서, 原告는 Hessen州 경찰에 자신이 임용될 수 있도록 가처분의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Hessen州 내무부 경찰청에서는 原告의 아래팔에 넓은 면적의 문신들이 있음을 고지하면서, Hessen州 경찰직에 임용되는 것을 거부했다. 이 판결에서는 原告의 아래팔에 문신이 있음을 고지하면서, 원고의 경찰직 지원이 거절될 수 있는 지 그 여부에 관한 것이 문제되었다.

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원고의 아래팔에 있는 면적이 넓은 문신들이 심지어 남의 이목을 끄는 것이었으며, 짧은 소매로 된 셔츠와 같이 적절한 옷을 입더라도 제 3자의 눈에 쉽게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원고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경찰관으로서) 부적합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을 충족시키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다.<sup>79)</sup>

78) Gerichtsentscheidung des Verwaltungsgerichts Frankfurt vom 14.02.2002, Az. 9 G 411/02(V) zu Taetowierungen bei Polizeivollzugsbeamten.

원고는 문신들이 또한 경찰공무원인 상태에서 경찰직을 수행하려고 할 때, 뜻밖에 다른 사람들과 부딪치게 되며, 이러한 문신들이 또한 약간 작거나 혹은 조금 덜 눈에 띄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고지 받았다.

임용된 後에 그리고 특별히 평생직장에 임명된 후에, 비교될만한 문신들을 신체에 덧붙이는 그러한 공무원들과 원고가 어떻게 교제하는 지, 피고측인 Hessen州 내무부가 신뢰할 만큼 그리고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할 수 없었던 상황이야말로 판결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결국 원고(原告)가 승소하였으며, 법원에서는 “Hessen州는 原告에게 2002년 2월 18일부터 경위급 경찰관을 양성하는 신규임용 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에 다시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그리고 소송의 대상이 된 가치는 5,390유로라는 금전으로 결정한다”고 판결하였다.<sup>80)</sup>(판결원문 별첨)

## ② 문신을 한 독일 교정공무원 사례

▶ Koblenz 행정법원에서는 2004년 11월 25일 판결에서 교정기관의 책임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근무 중에 병에 걸리기 쉬운 아래팔의 문신을 긴 소매로 된 근무복을 착용하여 그 문신이 보이지 않도록 지시를 할 수 있다고 선고한 바 있다.<sup>81)</sup> 즉 문신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原告는 교정 공무원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래팔 문신이 보이지 않도록 근무복을 착용하라는 교도소 측의 명령을 바꾸려고 하였다. 문신들은 오른쪽 아래팔에는 뱀과 함께 있는 비수, 화살이 들어있는 심장, 이름과 날짜 등이 그려져 있었고 왼쪽 아래팔에는 독일 국기와 함께 배와 같은 이름이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 문신들의 크기가 6cm<sup>2</sup>과 16cm<sup>2</sup> 였다.

2004년 5월 교도소장이 원고에게 문신들이 보이지 않도록 근무복을 착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었다. 이러한 문신들은 원고가 1997년 1월에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에 이

79) [http://www.jurawelt.com/gerichtsurteile/oerecht/VerwG/5395\(2007년 3월 4일 검색\) VG Frankfurt am Main: Tätowierung und Eignung für Polizeidienst VERWALTUNGSGERICHT FRANKFURT AM MAIN Geschäftsnummer: 9 G 411/02\(V\)](http://www.jurawelt.com/gerichtsurteile/oerecht/VerwG/5395(2007년_3월_4일_검색)_VG_Frankfurt_am_Main:_Tätowierung_und_Eignung_für_Polizeidienst_VERWALTUNGSGERICHT_FRANKFURT_AM_MAIN_Geschäftsnummer:_9_G_411/02(V))

80) [http://www.jurawelt.com/gerichtsurteile/oerecht/VerwG/5395\(2007년 3월 4일 검색\)](http://www.jurawelt.com/gerichtsurteile/oerecht/VerwG/5395(2007년_3월_4일_검색))

81) [http://www.gdpmannheim.de/urteile/index.html\(2007년 3월 4일 검색\) Verwaltungsgericht Koblenz, Urteil vom 25.November 2004 6 K 2207/04.KO](http://www.gdpmannheim.de/urteile/index.html(2007년_3월_4일_검색)_Verwaltungsgericht_Koblenz,_Urteil_vom_25.November_2004_6_K_2207/04.KO)

미 있었던 것이었다. 2001년 7월 문신제거를 위한 비용에 관한 정부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해당부서로부터 거절당했다.<sup>82)</sup> Koblenz행정법원이 상급자의 직무상의 명령에 대해 소속 교정공무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를 기각한 것이다.<sup>83)</sup>

나중에 원고는 행정고등법원(OVG Rheinland-Pfalz)에 항소를 했는 바, 2005년 6월 15일 기각되었다. 행정법원은 직무상의 명령을 확인해주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근무 중에 근무복(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는 법률에 복종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니폼 착용 의무를 통하여, 공무원의 개인적 특성은 국가적 기능 뒤쪽으로 물러나야 한다(soll). 머리스타일 혹은 수염스타일과 같이 개인적인 악세서리 혹은 이목을 끄는 문신들과 같은 개인적인 형상을 통해서 통일적인 모습을 갖춰야 할 제복착용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sup>84)</sup>

## 5) 문신관련 시민여론

2001년 Niedersachsen州와 Rheinland-Pfalz州에서는 1,142명(Niedersachsen州 시민은 898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制服을 입고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특정한 헤어스타일과 턱수염과 코밑의 수염, 장신구 착용 및 문신 등에 관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sup>85)</sup>

경찰관이 눈에 띄는 문신을 한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Befragt, ob sichtbare Taetowierungen stoeren)?라는 질문에 대해서

82) <http://www.michaelbertling.de/rs/akt/ovgrp1025405.htm>(2007년 3월 4일 검색) OVG Rheinland-Pfalz, Urteil vom 10.06.05, 2 A 10254 / 05

83) <http://www.jurawelt.com/gerichtsurteile/pressemitteilungen/oerecht/vg/10024>(2007년 3월 4일 검색)

84) <http://www.jurawelt.com/gerichtsurteile/pressemitteilungen/oerecht/vg/10024>(2007년 3월 4일 검색)

85) Axel Henrichs, "Zur beamtenrechtlichen Pflicht insbesondere von Uniformtraegern der Polizei zu einem angemessenen aeusseren Erscheinungsbild", in: ZBR Heft 3/2002, p. 87; Projektstudie Nr. 124 der Fachhochschule fuer oeffentliche Verwaltung Rheinland-Pfalz vom April 2001.

## ▶ Niedersachsen州 시민들은

35.4%는 심하게(stark) 불쾌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22.0%는 약간 덜 심하게 불쾌감을 느낀다고 답변했다.<sup>86)</sup>

## ▶ Rheinland-Pfalz州 시민들은

응답자의 51.4%는 경찰관들이 이러한 외모경향은 받아들일 수 없다(nicht akzeptabel)고 대답했으며,

27.6%는 약간 덜 받아들일 수 있다(weniger akzeptable)고 응답했다.<sup>87)</sup>

## 5. 일본경찰의 사례

일본 황궁경찰본부에서 신규 채용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간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이다. 경찰관을 신규채용할 경우, 지원자의 신체검사는 의사가 실시한다. 일본에서는 야쿠자 등 조직폭력단원들이 문신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일부 일탈집단에서 문신을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경찰직 지원자가 문신을 한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또한 상식적으로 문신을 한 사람이 어떻게 경찰관이 될 수 있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문신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직 지원자가 문신을 한 경우에, 채용이나 선발절차에서 당연히 배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규정이나 법령이 있지 않으며, 관련된 쟁송사례도 없다고 한다.

86) 대답의 가능성은 4가지로 범주화하였다. 강하게 불쾌하다, 약간 불쾌하다, 불쾌하지 않다, 전혀 불쾌하지 않다(stark, weniger, eher nicht oder gar nicht stoeren).

87) 대답의 가능성은 1-6점(학교의 성적평가처럼)으로 나뉘어지는 바, 1, 2점은 받아들일 수 있다(fuer akzeptabel), 3, 4점은 약간 덜 받아들일 수 있다(fuer weniger), 5, 6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fuer nicht akzeptabel).

## 제5장 결론 : 요약 및 정책제언

### 1. 각국 경찰의 문신관련 규제동향 요약

문신에 관한 역사적, 사회적 인식은 나라마다 상이하다. 뿐만 아니라 법집행기관 종사자들의 문신행위를 둘러싼 각국 경찰의 규제사례와 관련 입법동향은 매우 다양한 실정이다.

일본처럼 문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아주 엄격하여, 문신을 한 젊은이가 경찰직에 지원하는 경우도 거의 없을뿐더러(현지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하고 있음), 제복을 착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노출된 문신을 하는 경우를 거의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러한 이슈와 관련된 경찰관서의 입장이나 쟁송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수자 人權에 대해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는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직 지원자의 문신여부를 채용과정에서 엄격하게 심사하지는 않는 분위기이다. 미국의 각급 경찰관서의 채용절차와 신체검사과정에서는 의료적 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문신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최근 로스엔젤레스 경찰청이나 LA카운티 보안관실 등 대규모 경찰관서에서는 채용된 이후, 재직 경찰관의 노출(露出)된 문신에 대해서는 내용, 면적여부에 상관없이 규제하려는 동향이 확산되고 있다. 성인 6명당 1명이 문신을 하고 있는 미국사회의 경향이지만, 법집행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수준을 반영하기 위해서 각급 경찰관서에서는 경찰관서장의 직무명령 형식으로 이러한 문신규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팔에 문신이 있는 경찰관은 긴팔 소매가 있는 경찰제복을 착용토록 조치하고 있다. 그런데 8월 달을 전후하여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이러한 긴팔 소매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토록 강제하는 경찰관서장의 정책에 대해서 경찰노동조합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구체적이며 완화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최근 이러한 사례들과 관련된 연방법원의 판결과 중재법원의 판례동향은 경찰관들의 문신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경찰관서의 정책을 지지하

고 있는 동향이다.

샌디에고 경찰에서는 정복을 착용하는 경찰관과 그렇지 않은 경찰관들을 구분하여 기본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적어도 경찰관이라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이미지를 외부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과도한” 문신이라는 의미는 노출된 신체의 30%이상이 문신으로 새겨지는 것을 뜻한다. 또한 목주위에서 관찰될 수 있는 외부의 어떠한 문신들이라도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 이러한 경찰관서의 기본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경찰관들은 경고(warning)에서 해임(termination)에 이르는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샌디에고 경찰서의 문신규제 정책은 인접한 보안관실(Sheriff's Department)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도 유사하다. 여름철에 짧은 소매로 된 정복을 착용했을 때, 어떤 문신이라도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同정책에 따르면, 보안관실 소속의 법집행관들의 얼굴, 목 혹은 머리에 어떠한 문신도 금지되고 있다. 경찰관들로 하여금 용모가 단정하고(neat)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스콧데일(Scottsdale) 경찰청에서는 경찰직에 고용하려고 하는 者는 외설스러운(obscene), 性的인, 인종차별적 혹은 종교적으로 차별적인 문신을 외부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과도하게 외부로 노출되는 문신들은 금지된다. 여기서 ‘과도하다’는 단어의 개념은 노출된 신체일부의 1/3을 덮고 있는 문신들 혹은 쇄골(collarbone) 윗부분에 보이는 문신 그리고 칼라가 있는 셔츠의 개방된 부분에서 보이는 문신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나찌를 상징하는 卍와 같은 범죄적인 문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나체, 폭력, 명백히 性的인 것 혹은 저속한 그림 혹은 단어들을 담고 있는 문신들 역시 금지된다. 경찰관서의 인사관리 담당 책임자는 노출된 문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휴스틴 경찰청(Houston Police Department)에서는 2005년 1월초부터 휴스틴 경찰청에 근무하는 모든 경찰관들은 경찰제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동안 어떠한 문신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바, 예를 들면 자전거 순찰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만약 무릎 밑쪽에 문신을 하고 있다면, 여름철이라도 긴바지를 입어야 한다. 휴스틴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일반 시민들과 접촉할 때에, 전문 경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웃한 캐나다의 경우, 벤쿠버경찰에서는 구체적인 지침과 규정을 마련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다. 내용이나 면적(노출된 신체 면적의 30%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경찰직 지원자의 문신여부를 직접적으로 합격여부와 결부시키지는 않는다고 한다. 지원자가 문신을 했느냐 여부보다는 외부 노출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있다. 경찰관으로 근무할 때에 문신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 예를 들면, 正服이나 私服을 입었을 때, 노출(露出)되지 않은 가슴부위(chest)에 있는 문신은 규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목, 손, 팔뚝 등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부위의 문신은 내용과 형태를 불문하고 제거 혹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문신을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외관상 노출된 부분에 문신이 새겨져 있다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과도한 혹은 금지된 문신들은 경찰관서에서 제공한 유니폼으로 가려져야 한다(must). 뿐만 아니라, 경찰관 채용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문신 관련 내용을 고지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과도한(30% 이상) 혹은 허가되지 않은 문신들(부적절한, 직업 윤리상 어긋나는 혹은 공격적인, 나체 혹은 폭력, 성적으로 노골적인 혹은 저속한 표현, 그림, 단어들, 구절들 혹은 종교를 모독하는 언어)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私服부서의 수사요원들에 대해서는 문신에 대해서 규제하지 않는 동향이다.

영국의 경우, 일반 성인들의 12%가 문신을 하고 있는 동향이며, 재소자들이 문신을 한 경우는 거의 50%가 넘는 등 문신시술이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문신 시술시에는 자격있는 의사나 그러한 사람의 지시 하에 일하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문신을 새길수 있다. 청소년들(18세 미만)에게는 원칙적으로 시술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따라서 경찰직 채용절차에서는 문신내용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동향이다. 즉 “신체의 어떤 부위에라도 文身이 새겨진 경찰직 지원자는 구체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며, 특히 얼굴, 팔(lower arm) 혹은 손에 새겨진 文身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문신의 量, Size, 개수에 상관없이 일반 시민들이나 동료경찰관들에게 무례한/유치한/외설스러운, 인종차별적, 性的인, 暴力的인, 공포감 조성적 혹은 협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문신은 신체의 어떠한 부위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런던수도경찰청에서는 경찰관들의 화장(make up), 귀걸이착용, 헤어스타일, 피어싱(piercing), 히잡 및 터번착

용(turban), 보석착용(눈에 띄지 않게 착용), 드레드 락(dreadlocks, 가늘게 땀은 머리), 턱수염(beard) 등에 관해서 구체적 제한 및 금지규정을 정해놓고 있다.

런던市(City of London) 경찰에서는 경찰관 채용과 관련하여 인터넷상에 지원요건 등을 홍보하고 있는 바, 특히 지원자의 문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있다. “경찰관은 자신의 존엄스러운 역할을 유지하면서, 좋은 인상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얼굴이나 손에 문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당신의 경찰관 지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야한 혹은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혹은 일반 공중으로부터 혹은 동료로부터 어떤 도발을 유발할 수 있는 혹은 공정성, 불편부당성 그리고 평등성에 기초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의심케 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충성심 혹은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떤 문신들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문신은 아래팔에 있는 문신은 항상 근무 중에 보이지 않도록 덮여져야 합니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노스햄브리아경찰청(Northumbria Police)의 문신규제 동향에 의하면,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문신을 갖고 있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 ▷ 경찰직의 존엄성과 권위를 훼손하는 문신들,
- ▷ 야한(garish), 다수의 혹은 특별히 두드러진 문신들,
- ▷ 일반시민들 혹은 동료들에게 범죄를 야기 시킬 수 있는 혹은 도발을 야기할 수 있는 문신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무례한, 음란스러운(lewd), 야만적인, 인종차별적인, 性的인, 分派적인, 同性愛的인, 暴力的인 혹은 脅迫的인 문신들과 여성들이나 소수자들 혹은 공동체의 다른 어떤 구성원들, 혹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특별한 그룹들과 연관된 사람들에 대하여 허용되지 않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문신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만약 지원자의 얼굴, 목, 팔뚝 혹은 손에 문신을 갖고 있다면, 경찰직에 지원할 시에 문신의 특징, 사용된 단어들, 넓이, 크기 그리고 문신의 위치에 관하여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경찰에서는 경찰직 채용과정에서 지원자들의 기본요건으로서 안내책자에서 문신(Taetowierung)과 피어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 즉 “외관상 눈에 띄만한

문신과 피어싱이 없어야 한다(Keine sichtbaren Taetowierungen und kein sichtbares Piercing)”.

바덴-뷔르템베르크州경찰에서는 채용절차 가운데, 신체검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문신을 의사에 의하여 검사하고 있는 동향이다. 그리고 경찰관의 외모(용모) 및 문신과 관련된 규제사항을 구체적인 법령(州경찰의 복무규정-Polizeidienstvorschrift: PDV)으로 입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신과 관련된 신체검사 규정을 제정하여,<sup>88)</sup> 지원자의 문신에 대한 부분을 피부(Haut)에 관한 사항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피부에 결함이 있을 시 해당자를排除할 수 있는 기준 및 경찰직무 적합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문신을 한 지원자의 합격여부는 경찰관서의 채용담당부서의 책임자가 단독(위원회형식이 아님)으로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경찰지원자의 문신은 금지되는 바, 옷을 입었을 때, 보이지 않는 신체상의 문신도 규제된다. 刑法에 저촉될 수 있는 내용, 도덕적으로(moralische) 문제시될 수 있는 내용, 外國人에게 적대적인 내용, 性的인 표현, 악마(마귀, 사탄 등, Teufel)관련 내용, 종교적으로 위반될 만한 내용 등은 금지된다. 의사에 의하여 신체검사시에 문신은 정밀하게 체크되며, 이와 관련되어 지원자가 배제될 수 있다(entfernen kann).

채용과정에서 문신을 한 지원자는 의사에 의하여 피부질환적 관점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 노출 면적, 내용 등에 대해서 인사담당 경찰관의 육안검사를 거친다. 심사를 거쳐서 심각한 문신인 경우에는 불합격처리한다. 그러나 치료 및 수술을 통하여 제거될 만한 수준의 문신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합격시켜서, 후일 지원자의 自費로 경찰관 임용전까지 제거할 수 있도록 “문신제거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재직 경찰관들의 문신에 대해서는 경찰관서 내부의 복무지침 등을 통하여 원칙을 마련, 규제하고 있다. 외부로 노출되는 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sup>89)</sup>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는 금지시키고 있다. 다음과 같은 문신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88) 관련법령은 【PDV 300: 경찰직무 적합성 및 경찰직무 수행능력에 관한 의료적 판단】이다.

89) 盛夏근무복을 착용했을 때에도 문신이 감춰진다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 갖고 있는 문신이 현존하는 刑法이나 질서위반법에 저촉되거나
- 다른 사람의 명예 감정이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
- 단어나 그림에서 정치적인 내용, 즉 세계관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을 때.

최근 용모복장과 문신에 대한 독일(행정)법원의 판례는 좋은 시사점이 된다 할 것이다. 독일시민들은 경찰관들의 문신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부정적(불쾌감 혹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등)으로 평가하고 있는 동향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의 경우 시민들이 문신을 하는 사례가 많지만, 여전히 경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이미지를 원하고 있다. 경찰관서의 책임자들은 경찰직무의 특성과 여론을 감안하여 경찰관들의 문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 2. 한국경찰의 문신규제 방안을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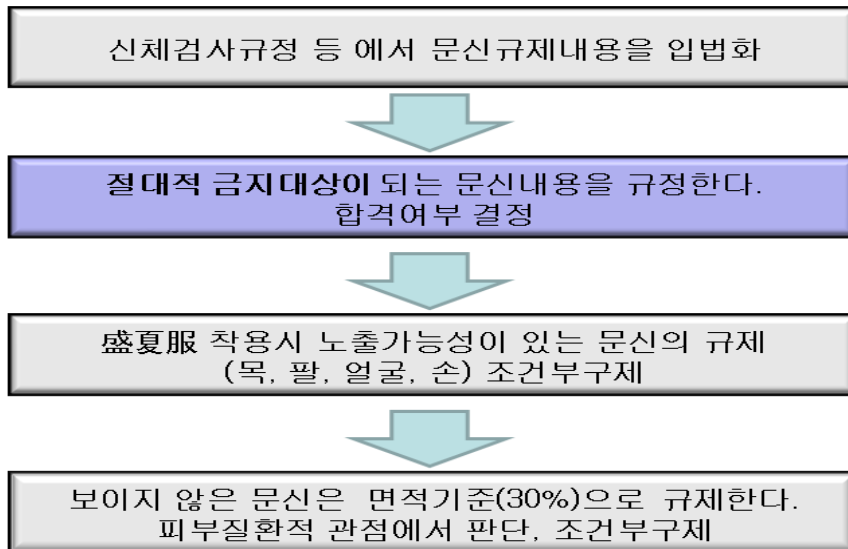
여러 나라의 사례와 같이, 경찰관들의 문신에 대해서는 선진 각국의 경찰들이 대부분 규제하고 있는 동향이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문신 시술행위가 하나의 유행(流行)이나 트렌드化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은 여전히 경찰관에 대해서 전문 법 집행관으로서의 역할과 이미지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적어도 경찰관이라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이미지를 외부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문신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인 서구사회에서조차 그러한 인식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실적 상황과 경찰직무의 특성, 경찰직 지원자의 기본권 등 여러 측면에서 문신규제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본과제를 수행하면서 한국경찰에 적절한 문신관련 규제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캐나다와 미국경찰처럼 경찰관 채용절차에서 지원자의 문신여부를 당락결정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채용된 이후에 비로소 재직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내용여부에 상관없이 문신을 일반시민들에게 노출시켜서는 안된다는 문신 규제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문신을 한 경찰관들에게 노출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긴팔 소매로 된 경찰제복을 착용하고 근무케 하는 미국경찰의 방침은 후일 새로운 심

각한 인권침해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는 안 될 것이다.<sup>90)</sup>

따라서 경찰관 선발과정, 즉 신체검사 단계에서부터 구체적,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림 6> 한국 경찰의 문신규제방안 개요



#### 1) 경찰관채용절차 및 신체검사 규정에서 "문신규제 내용"을 입법화

이는 독일의 경찰복무규정과 신체검사 기준, 캐나다의 관련법령 등을 통해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문신을 피부질환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도록 한다(의사의 소견). 아울러 재직 경찰관의 문신에 대해서도 통일적인 규제기준(대체로 법률보다는 하위법령으로 입법화할 가능성이 높음)을 마련해야 한다. 규제내용, 예를 들면 금지될만한 문신의 종류와 허용할만한 내용의 문신 등에 대해서 열거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정할 때에 경찰관계자, 인권단체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객관적이고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한다.

90) 이러한 우려는 미국의 상황을 보면, 예견가능하다.

## 2) 구체적인 문신 규제방안 제시

한국의 일반시민들 혹은 경찰직 지원자들의 문신시술 경향에 대한 현실을 감안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문신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 ▶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할 문신의 내용을 열거한다.

영국수도경찰청, 독일바덴-뷔르템베르크주경찰청 및 캐나다벤쿠버경찰청 사례를 참조한다. 예를 들면, 나체, 폭력, 명백히 性的인 것 혹은 저속한, 외설스러운(obscene), 무례한, 分派적인, 同性愛的인, 공격적인, 暴力的인, 脅迫的인, 공포감 조성적, 일반 시민들이나 동료경찰관들에게 무례한/유치한/, 다른 사람의 명예 감정이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 범죄단체를 상징하는, 정치적인 내용, 여성들이나 소수자들 혹은 공동체의 다른 어떤 구성원들 혹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특별한 그룹들과 연관된 사람들에 대하여 허용되지 않는 태도, 경찰직의 존엄성과 권위를 훼손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찰관의 능력을 의심케 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인종 차별적, 종교 차별적, 종교모독적, 직업 윤리상 어긋나는, 일반 공중으로부터 혹은 동료로부터 어떤 도발을 유발할 수 있는,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일반시민들 혹은 동료들에게 범죄를 야기시킬 수 있는 내용의 문신(그림, 글씨, 기호 등)은 금지한다.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내용의 문신을 한 지원자를 불합격(不合格) 처리할 시에는 경찰채용담당부서의 책임자를 포함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제거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 문신시술자의 배경조사를 통하여 경찰관으로서의 부적격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두도록 한다.

### ▶ 상대적으로 금지해야할 문신은 노출가능성에 중점을 둔다.

절대적으로 금지될만한 문신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꽃, 동물, 가치중립적 단어, 표현 및 기호, 미용목적 혹은 패션의 한 형태로서 시술한 문신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특히 영국수도경찰청의 문신규제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문신을 참고하여 이러한 문신들은 노출가능성에 기준을 두고 규제한다. 면적여부에 상관없이<sup>91)</sup> 얼굴, 손등, 팔(lower arm) 혹은 목주변, 쇄골(collarbone) 윗부분에 보이는 문신 등에 대해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신체검사시 이러한 유형의 문신자에 대해서는 독일경찰의 사례처럼, “조건부 규제” 제도를 도입하여, 경찰관 임용前 혹은 경찰학교 입교前까지 自費로 제거할 수 있도록 서약서를 작성제출토록 하여, 규제대상 문신이 해소되도록 한다. 만약 이러한 문신이 제거되지 않았을 시에는 경찰관으로 채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주의와 경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노출되지 않은 상대적 문신의 경우도 그 면적을 제한한다.

이러한 방안은 문신을 피부질환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독일경찰의 사례에서<sup>92)</sup>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바, 피부조직에 異物質을 삽입한 문신은 피부질환의 일종으로 변질될 수 있다. 따라서 깨끗한 신체 상태와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나 노출될 가능성이 없는 문신(가슴, 배, 등, 옆구리 등)이라도 면적에 있어서 규제하는 것(30%기준)이 바람직하다. 이에 해당하는 경찰직 지원자에 대해서는 “조건부규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이 문신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과 객관적 절차를 마련하여, 채용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1) 미국이나 캐나다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출면적의 30% 기준은 한국에서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92) 독일경찰의 신체검사관련 규정 제 3조 피부(Haut) 1항-피부는 깨끗하고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 피부의 질병성 변화들은 그것의 의미 혹은 예측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숙박하는 곳에서 함께 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는 요인을 야기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보균자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심각한 피부질환이 있는 지원자는(예를 들면, 청소년기의 확산된 여드름, 세균감염) 그런 이유에서 우선 성공적인 치료여부에 대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피부와 눈에 보이는 피부점막을 살펴봄으로써, 다른 신체기관의 질병에 대한 의심이 밝혀진다. 그래서 적절한 신체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신들은 반드시 기록하고, 서면화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이상현, 「범죄심리학」, 제3판, 서울: 박영사, 2004.

R. A. Cloward and L. E. Ohlin, *Delinquency and Opportunity: A Theory of Delinquent Gangs*, New York: Free Press, 1960.

[프라임경제] 2006년 10월 19일(목)

Vancouver Sun Dec. 05, 2006.

Stuart Pfeifer(Times Staff Writer), “Tattooed Arm of the Law Is Raising Image Questions”, in: Los Angeles Times, Aug. 22, 2005.

Sofortinformation 3/98 des BPP an die Referate/Stabsbereiche Oeffentliches- keitsarbeit der Polizei Baden-Wuerttemberg

Gerichtsentscheidung des Verwaltungsgerichts Frankfurt vom 14.02.2002, Az. 9 G 411/02(V) zu Taetowierungen bei Polizeivollzugsbeamten.

VG Frankfurt am Main: Tätowierung und Eignung für Polizeidienst  
VERWAL-TUNGSGERICHT FRANKFURT AM MAIN Geschäftsnummer:  
9 G 411/02(V)

OVG Rheinland-Pfalz, Urteil vom 10.06.05, 2 A 10254 / 05

Verwaltungsgericht Koblenz, Urteil vom 25.November 2004 6 K 2207/04.KO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42499&g\\_menu=021300](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42499&g_menu=021300)(2007년 4월 10일 검색)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6&articleid=2007040515520048494&newssetid=83>(2007년 4월 9일 검색)

[http://media.paran.com/sphoto/news\\_view\\_photo.php?dirnews=194657&year=2006 &rtlog=MP](http://media.paran.com/sphoto/news_view_photo.php?dirnews=194657&year=2006 &rtlog=MP) (2007년 4월 10일 검색)

- <http://www.police.go.kr/pds/whitePaperView.do?id=2515>(2007년 3월 7일 검색)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605/h2006050318361322000.htm>(2007년 4월 10일 검색)
- <http://www.barrowbc.gov.uk/docs/TattooInfo.doc>(2006년 10월 19일 검색)
- <http://kr.dic.yahoo.com/search/enc/result.html?pk=13524000&p=문신%20&field=id&type=enc#4>(2006년 5월 7일 검색)
- <http://kr.dic.yahoo.com/search/enc/result.html?pk=10873600&p=공무담임권%20&field=id&type=enc>(2007년 4월 11일 검색)
- <http://www.sportsseoul.com/news/life/social/050928/20050928114230226000.htm>(2007년 4월 10일 검색)
-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section\\_id2=&office\\_id=057&article\\_id=0000027390](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section_id2=&office_id=057&article_id=0000027390)(2007년 4월 10일 검색)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605/h2006050318361322000.htm>(2007년 4월 10일 검색)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4&articleid=2007030119414\\_174619&newssetid=509](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4&articleid=2007030119414_174619&newssetid=509)(2007년 4월 10일 검색)
- <http://www.nyc.gov/html/nypd/html/chfpers/personnel/applicant-home.html>(2007년 4월 11일 검색)
- <http://www.nyc.gov/html/dcas/downloads/pdf/noes/policeofficer601060116012.pdf>(2007년 4월 11일 검색)
- <http://metropolice.metafaq.com>(2007년 5월 6일 검색)
- <http://www.nypd2.org/html/recruit/requirements.html>(2007년 4월 11일)
- <http://forums.officer.com/forums/archive/index.php/t-37176.html>(2007년 4월 11일 검색)
- <http://www.joinlapd.com/selection.html>(2007년 4월 11일 검색)
- <http://www.lapd.com/article.aspx?&a=3020>(2007년 4월 11일 검색)
- [http://en.wikipedia.org/wiki/Los\\_Angeles\\_Police\\_Department](http://en.wikipedia.org/wiki/Los_Angeles_Police_Department)(2007년 4월 11일 검색)



uf\_mit\_zukunft.pdf(2007년 3월 2일 검색)

[http://www.bundespolizei.de/nn\\_484490/DE/Home/05\\_\\_Berufsperspektiven/infobroschuere\\_\\_beruf\\_\\_mit\\_\\_zukunft,templateId=raw,property=publicationFile.pdf/info\\_broschuere\\_beruf\\_mit\\_zukunft.pdf](http://www.bundespolizei.de/nn_484490/DE/Home/05__Berufsperspektiven/infobroschuere__beruf__mit__zukunft,templateId=raw,property=publicationFile.pdf/info_broschuere_beruf_mit_zukunft.pdf)(2006년 11월 15일 검색)

[http://www.bundespolizei.de/nn\\_484490/DE/Home/05\\_\\_Berufsperspektiven/EAV/eav\\_\\_node.html\\_\\_nnn=true](http://www.bundespolizei.de/nn_484490/DE/Home/05__Berufsperspektiven/EAV/eav__node.html__nnn=true)(2007년 3월 2일 검색)

<http://www.polizei-bw.de/>(2007년 3월 2일 검색)

<http://www.gdpmannheim.de/urteile/index.html>(2007년 3월 4일 검색)

[http://www.polizei-bw.de/beruf/berufsinfo/index\\_1.htm](http://www.polizei-bw.de/beruf/berufsinfo/index_1.htm)(2007년 3월 2일 검색)

<http://www.michaelbertling.de/rs/akt/ovgrp1025405.htm>(2007년 3월 4일 검색)

<http://www.jurawelt.com/gerichtsurteile/oerecht/VerwG/5395>(2007년 3월 4일 검색)

## 참고판례(경찰관 사례)

[http://www.jurawelt.com/gerichtsurteile/oerecht/VerwG/5395\(2007년 3월 4일\)](http://www.jurawelt.com/gerichtsurteile/oerecht/VerwG/5395(2007년 3월 4일))

VG Frankfurt am Main: Tätowierung und Eignung für Polizeidienst

VERWALTUNGSGERICHT FRANKFURT AM MAIN

Geschäftsnummer: 9 G 411/02(V)

Beschluss

In dem Verwaltungsstreitverfahren [...]

wegen Einstellung in den Polizeidienst

hat das Verwaltungsgericht Frankfurt am Main, 9. Kammer, durch

...

am 14.02.2002 beschlossen:

Dem Antragsgegner wird im Wege der einstweiligen Anordnung aufgegeben, dem Antragsteller die Teilnahme an der am 18. Februar 2002 in der Form eines Studiums beginnenden Ausbildung für den gehobenen Polizeivollzugsdienst des Landes Hessen zu ermöglichen.

Die Kosten des Verfahrens hat der Antragsgegner zu tragen.

Der Wert des Streitgegenstandes wird auf 5.390,26 Euro festgesetzt.

### Gründe

Das Begehren des Antragstellers ist als Antrag auf Erlass einer einstweiligen Anordnung zulässig (§ 123 Abs. 1 VwGO) und hat auch in der Sache Erfolg, da sowohl ein Anordnungsgrund wie auch ein Anordnungsanspruch glaubhaft gemacht sind (§ 123 Abs. 3 VwGO, § 920 Abs. 2 ZPO).

Die gerichtliche Entscheidung über das Einstellungsbegehren des Antragstellers ist eilbedürftig, da die angestrebte Ausbildung für den gehobenen Polizeivollzugsdienst in Gestalt eines Studiums an der Verwaltungsfachhochschule bereits am 18. Februar 2002 beginnt. Eine Teilnahme an der zu diesem Zeitpunkt beginnenden Ausbildung kann im Rahmen eines Hauptsacheverfahrens nicht erreicht werden.

Eine einstweilige Anordnung nach § 123 Abs. 1 S. 2 VwGO darf zwar grundsätzlich das Ergebnis eines Hauptsacheverfahrens nicht vorwegnehmen, sondern muss sich auf eine vorläufige Regelung, soweit möglich, beschränken. Dabei darf jedoch nicht außer Acht gelassen werden, dass das Gericht gem. Art. 19 Abs. 4 S. 1 GG, Art. 2 Abs. 3 HV zur Gewährleistung eines effektiven Rechtsschutzes verpflichtet ist und dementsprechend auch ggf. unter Vorgriff auf eine spätere Hauptsacheentscheidung bereits im einstweiligen Rechtsschutzverfahren alles zu tun hat, was zur Gewährleistung der Rechte eines Antragstellers erforderlich ist. Vorliegend wird der Antragsteller, der ausweislich seines Lebenslaufes am 22. Oktober 1971 geboren ist, im Oktober 2003 das 32. Lebensjahr vollendet haben. Er läuft dann Gefahr, die absolute Höchstaltersgrenze nach § 14 Abs. 2 HPOILVO zu überschreiten. In dieser Bestimmung ist festgelegt, dass die an sich geltende Höchstaltersgrenze für

die Einstellung als Anwärter für eine Ausbildung im gehobenen Dienst nach § 14 Abs. 1 S. 1 Nr. 3 HPolLVO von 28 Jahren höchstens bis zum Erreichen des 32. Lebensjahres ausgeweitet werden kann. Der Antragsteller unterfällt zwar den weiteren Bedingungen des § 14 Abs. 2 HPolLVO nicht, da er nicht wegen Betreuung mindestens eines mit ihm in häuslicher Gemeinschaft lebenden Kindes unter 18 Jahren oder wegen der tatsächlichen Pflege eines nach ärztlichem Gutachten pflegebedürftigen nahen Angehörigen die Höchstaltersgrenze von 28 Lebensjahren überschritten hat. Gleichwohl ergibt sich aus der Bestimmung des § 14 Abs. 2 HPolLVO, dass die an sich geltende Höchstaltersgrenze von 28 Lebensjahren allenfalls bis auf die Vollendung des 32. Lebensjahres hin ausgedehnt werden kann. Es ist zumindest sehr fraglich, ob die Ausnahmebefugnis nach § 14 Abs. 1 S. 2 HPolLVO dahin reicht, dass auch von der Einhaltung des 32. Lebensjahres im Ausnahmewege abgesehen werden kann. Es spricht vielmehr alles dafür, dass sich der Spielraum für die Ausnahmeerteilung nach § 14 Abs. 1 S. 2 HPolLVO auf den Zeitraum zwischen der Vollendung des 28. und 32. Lebensjahres erstreckt. Es ist dem Antragsteller damit nicht zuzumuten, seine Rechte im Rahmen eines Hauptsacheverfahrens durchzusetzen, da er dann die sehr ernsthafte Gefahr liefe, trotz eines Obsiegens im Hauptsacheverfahren am zwingenden Einstellungshindernis der Überschreitung des zulässigen Höchstalters zu scheitern. Folglich können die Rechte des Antragstellers, die für die Prüfung des Anordnungsgrundes zu unterstellen sind, nur dann ausreichend und angemessen gewahrt werden, wenn eine Entscheidung im Eilverfahren ergeht, auch wenn dabei womöglich das Ergebnis eines späteren Hauptsacheverfahrens vorweggenommen werden muss.

Der Antragsteller hat auch einen Anordnungsanspruch glaubhaft gemacht,

da die Ablehnung seiner Einstellung in den Anwärterdienst zwecks Ausbildung für den gehobenen Polizeivollzugsdienst auf Gründen beruht, hinsichtlich derer sich in einem Hauptsacheverfahren aller Voraussicht nach herausstellen wird, dass sie rechtlich unzulässig sind.

Der Antragsteller kann sich als italienischer Staatsangehöriger zwar nicht auf Art. 33 Abs. 2 GG berufen, da dieses Grundrecht nur Deutschen den gleichen Zugang zu öffentlichen Ämtern gewährt, einschließlich der notwendigen vorausgehenden Ausbildung. Ebenso wenig kann sich der Antragsteller auf Art. 12 Abs. 1 GG berufen, da die Berufsfreiheit dort ebenfalls nur Deutschen gewährt ist. Daran ändert auch die dem Antragsteller zustehende Freizügigkeit nach Art. 39 EG nichts, da die spätere Tätigkeit im Polizeivollzugsdienst jedenfalls bei gegenwärtiger summarischer Prüfung der Rechtslage unter den Vorbehalt des Art. 39 Abs. 4 EG fallen wird. Allenfalls mag insoweit erwogen werden, ob die bloße Ausbildung für eine Polizeidiensttätigkeit außerhalb des Vorbehalts von Art. 39 Abs. 4 EG steht, so dass der Antragsteller dann eine Gleichbehandlung mit Deutschen im Hinblick auf sein Recht zur freien Wahl der Ausbildungsstätte nach Art. 12 Abs. 1 GG verlangen könnte. Dies kann jedoch dahinstehen, da der Antragsteller sich auf Art. 134 HV berufen kann. Dieses Grundrecht gibt jedem und im Unterschied zu Art. 33 Abs. 2 ohne Rücksicht auf die Deutscheneigenschaft das Recht, sich für ein öffentliches Amt zu bewerben, wenn die nötige Eignung und Befähigung nachgewiesen wird. Zwar mag es zulässig sein, das Grundrecht zusätzlich an den Besitz der deutschen Staatsangehörigkeit zu knüpfen. Vorliegend hat der Antragsgegner jedoch mit Schriftsatz vom 11.02.2002 ausdrücklich erklärt, dass die dem Antragsteller fehlende deutsche Staatsangehörigkeit aus seiner Sicht kein Einstellungshindernis und damit auch kein

Ausbildungshindernis darstellt. Folglich steht dem Antragsteller aus Art. 134 HV i. V. m. Art. 1 HV der Gleichbehandlungsanspruch zu, gerichtet auf eine chancengleiche und rechtsfehlerfreie Behandlung seiner Bewerbung für eine Tätigkeit im öffentlichen Dienst, hier eine Ausbildung zwecks späterer Berufsausübung als Polizist. Folglich hat der Antragsgegner zur Behandlung dieser Bewerbung die gleichen Grundsätze zu beachten, wie sie ansonsten für Bewerbungsverfahrensansprüche in der Rechtsprechung der Verwaltungsgerichte entwickelt worden sind.

Hier steht nach Prüfung der Sach- und Rechtslage fest, dass die Bewerbung des Antragstellers ausschließlich daran gescheitert ist, dass er großflächige Tätowierungen an den Unterarmen aufweist. Sonstige Einstellungshindernisse macht der Antragsgegner nicht geltend. Anders ausgedrückt bedeutet dies, dass der Antragsgegner den Antragsteller bei Nichtvorliegen der entsprechenden großflächigen Tätowierungen auf seinen Unterarmen ohne weiteres in die Ausbildung für den gehobenen Polizeivollzugsdienst übernehmen würde. Damit ist zwischen den Beteiligten allein streitig, ob die Bewerbung des Antragstellers lediglich unter Hinweis auf die Tätowierungen an den Unterarmen des Antragstellers abgelehnt werden darf.

Dabei handelt es sich im Hinblick auf die auch vom Antragsgegner zu wahrenen Persönlichkeitsrechte des Antragstellers aus Art. 2 Abs. 1 GG, Art. 2 Abs.1 HV im Ergebnis um eine Rechtsfrage. Das Auswahlermessen, das dem Antragsgegner als Dienstherrn zusteht, wird durch die Wahrung der Persönlichkeitsrechte begrenzt, da der Antragsgegner auch bei pflichtgemäßer Ermessensausübung keine Anforderungen stellen darf, die über das Verlangen der notwendigen Eignung in persönlicher,

gesundheitlicher oder charakterlicher Hinsicht hinausgehen, wie sich nicht zuletzt auch aus Art. 134 HV selbst ergibt.

Die großflächigen Tätowierungen auf den Unterarmen des Antragstellers sind zwar auffällig und bei entsprechender Kleidung wie z. B. einem kurzärmeligen Hemd für Dritte schnell sichtbar. Dies allein genügt jedoch nicht, den Antragsteller deshalb als in persönlicher Hinsicht ungeeignet erscheinen zu lassen. Der Hinweis des Antragsgegners darauf, entsprechende Personen, hier insbesondere Polizeibeamte begegneten bei der Bevölkerung Kritik oder Bedenken im Hinblick auf ihre persönlichen Eigenheiten, hier das Tragen eines Körperschmucks, kann nicht durchschlagen, da der öffentliche Dienst gerade im Hinblick auf das Grundrecht aus Art. 134 HV stets auch ein gewisses Spiegelbild der jeweiligen Gesellschaft und ihrer dortigen Verhältnisse ist. Insoweit kann nur festgestellt werden, dass Art und Umfang von Tätowierungen bei Menschen in der neueren Zeit stark zugenommen haben, auch wenn dies vielfach eine generationenbedingte Frage sein mag. Gleichwohl kann die Tatsache großflächiger Tätowierungen allein letztlich kein Grund sein, dem Antragsteller die persönliche Eignung für den Polizeivollzugsdienst abzusprechen. Er weist zutreffend darauf hin, dass Tätowierungen auch bei bereits im Dienst befindlichen Polizeibeamten anzutreffen sind, mögen diese auch etwas kleiner oder weniger auffällig sein. Gleichwohl ist auch der Polizeidienst mit seinen Mitarbeiterinnen und Mitarbeitern von entsprechenden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en wie der Zunahme von Tätowierungen oder dem Tragen von Ohrschmuck durch Männer etc. erfasst worden, ohne dass dies letztlich die Einsatzfähigkeit des Personals und seine hinreichende Akzeptanz bei den Betroffenen ernsthaft beeinträchtigt hätte. Die bloße Erwartung von Teilen der Bevölkerung, Polizeibeamte oder

-beamtinnen müssten ein bestimmten eher traditionellen Erwartungen entsprechendes Aussehen haben, genügt für sich genommen nicht, die aus der freien Entfaltung der Persönlichkeit herrührenden Rechte eines jeden, denen zugleich auch das Recht aus Art. 134 HV zusteht, in unverhältnismäßiger Weise zu beschränken.

Da der Antragsgegner vorliegend gegen den Inhalt der Tätowierungen keinerlei Bedenken vorgebracht hat, was allerdings in der Tat ein durchgreifendes Einstellungshindernis begründen könnte, besteht auch unter diesem Gesichtspunkt kein Anlass, die persönliche oder gesundheitlich Eignung des Antragstellers in Frage zu stellen. Dies gilt auch für die Frage, ob und inwieweit der Antragsteller gewissen höheren Gefährdungen hinsichtlich einer Allergieerkrankung ausgesetzt ist. Hierbei handelt es sich um sehr allgemein gehaltene Hinweise, ohne dass eine konkrete Gefahrenlage gerade hinsichtlich der Person des Antragstellers dargetan wird. Polizeiarztlich wurden gerade keine Einstellungshindernisse gesehen, und zwar auch im Hinblick auf die bereits bekannten Tätowierungen. Dies ergibt sich auch aus dem einschlägigen Auswahlvorgang, da dort klar erkennbar ist, dass polizeiärztlicherseits keine Einstellungsbedenken geltend gemacht wurden, sondern lediglich die Einstellungsbehörde selbst auf die Tätowierungen zwecks weiterer dienstrechtlicher Beurteilung hingewiesen wurde.

Da der Antragsteller zudem im Bereich des Auswahlverfahrens und der dort geführten Auswahlgespräche unter Beiziehung von Psychologen erfolgreich war, also auch insoweit seine konkrete persönliche Eignung hinreichend zur Überzeugung des Antragsgegners nachgewiesen hat, sieht die Kammer keinen Anlass, allein mit Blick auf das Vorhandensein der

großflächigen Tätowierungen und die mangelnde Bereitschaft des Antragstellers, diese ggf. entfernen zu lassen, die Ablehnung der Bewerbung als rechters einzustufen. Insoweit spielt auch eine wesentliche Rolle, dass der Antragsgegner es nicht vermocht hat, im Rahmen des Eilverfahrens glaubhaft und nachvollziehbar darzulegen, wie er mit Beamtinnen und Beamten umgeht, die sich nach ihrer Einstellung und insbesondere nach einer Lebenszeiternennung vergleichbare Tätowierungen zulegen. Hier wird lediglich relativ vage dargetan, man wolle auf die entsprechenden Beschäftigten einwirken, um ein Wohlverhalten in der angestrebten Weise zu erreichen. Ob aber tatsächlich der Wegfall der persönlichen Eignung ohne wenn und aber auch beim nachträglichen Erwerb einer entsprechenden Tätowierung angenommen wird, hat der Antragsgegner schriftsätzlich nicht ausgeführt geschweige denn glaubhaft nachgewiesen. Der Antragsteller hingegen hat bereits im Vorfeld der Einleitung des einstweiligen Rechtsschutzverfahrens eingehend darauf hingewiesen, dass seiner Kenntnis nach eine größere Zahl von Beamtinnen und Beamten Tätowierungen aufweise, ohne dass seitens des Dienstherrn dagegen durchgreifende Maßnahmen ergriffen würden. Der Antragsgegner hat es im gerichtlichen Verfahren trotz eines diesbezüglichen mündlichen Hinweises seitens des Vorsitzenden nicht vermocht, insoweit nähere Aufklärung zu leisten oder darzutun, dass tatsächlich in jedem Fall einer entsprechenden durchaus auffälligen Tätowierung, mag sie auch etwas kleiner sein als die des Antragstellers, in einer Weise verfahren wird, die letztlich darauf hinausläuft, den Beamten oder die Beamtin zur Entfernung der entsprechenden Tätowierung anzuhalten. Folglich kann dem Antragsteller unter Gleichbehandlungsgesichtspunkten das Vorhandensein seiner Tätowierungen wie sein Wunsch auf deren Beibehaltung keinen ernsthaften Nachteil bewirken.

Dem Einstellungsbegehren des Antragstellers steht schließlich nicht entgegen, dass die Ausbildung im Beamtenverhältnis auf Widerruf erfolgen wird und insoweit auch die Einstellungsvoraussetzungen des § 7 Abs. 1 HBG beachtet werden müssen. Nach § 7 Abs. 2 HBG darf nur ein Deutscher i. S. d. Art. 116 GG in ein Beamtenverhältnis berufen werden, wenn die Aufgaben es erfordern. Diese Regelung enthält zugleich einen Verweis auf die gemeinschaftsrechtliche Grenze für die Arbeitnehmerfreizügigkeit im Bereich des öffentlichen Dienstes. Zwar ist davon auszugehen, dass die Tätigkeiten im Polizeivollzugsdienst fraglos Aufgaben darstellen, die von der Reichweite der gemeinschaftsrechtlichen Freizügigkeitsregelung, heute in Art. 39 EG enthalten, ausgenommen sind und unter den Vorbehalt des Art. 39 Abs. 4 EG fallen. Für die bloße Ausbildung zum Polizeivollzugsbeamten kann dies jedoch nicht gelten, da hier noch keine Aufgaben verrichtet werden, die eine enge Verbindung des Aufgabenträgers zum jeweiligen Staat, verdeutlicht durch das Band der Staatsangehörigkeit, erforderlich machen. Deshalb ist für das Eilverfahren davon auszugehen, dass die Einstellung in das Beamtenverhältnis auf Widerruf allein an § 7 Abs. 1 Nr. 1 HBG, nicht aber an § 7 Abs. 2 HBG zu messen ist. Dies entspricht im übrigen auch dem Prozessvortrag des Antragsgegners selbst, dessen Praxis offenbar dahin geht, ohne Rücksicht auf § 7 Abs. 2 HBG schlechthin EU-Staatsangehörige in den Polizeivollzugsdienst einzustellen und allenfalls bestimmte näher einzugrenzende Funktionsbereiche von der Erfüllung des Staatsangehörigkeitserfordernisses abhängig zu machen. Ob diese Auffassung mit der gegenwärtigen Fassung von § 7 Abs. 2 HBG vereinbar ist, kann für das Eilverfahren dahinstehen, da es vorliegend eben gerade nicht um die Übernahme in ein Probebeamtenverhältnis mit laufender Wahrnehmung konkreter vollzugspolizeilicher Aufgaben im Schwerpunkt geht, sondern um die

Ausbildung für eine entsprechende Berufstätigkeit. Sie wird durch die konkrete Wahrnehmung von hoheitsrechtlichen Aufgaben (Art. 33 Abs. 4 GG, Art. 39 Abs. 4 EG) allenfalls am Rande, nicht aber schwerpunktmäßig geprägt. Da der Antragsgegner zudem zu erkennen gegeben hat, dass es für ihn keine Frage darstellt, auch einen EU-Staatsangehörigen nach erfolgreicher Ausbildung für den gehobenen Polizeivollzugsdienst in die Polizeiaufbahn zu übernehmen, kann es den späteren Verwaltungsverfahren überlassen werden, ob dabei nach § 7 Abs. 3 S. 1 HBG verfahren werden muss oder aber eine funktionsbezogene enge Auslegung von § 7 Abs. 2 HBG bereits zu dem Ergebnis führen kann, dass die bloße Tätigkeit im Bereich der Vollzugspolizei ohne konkretes Funktionsamt auch von Nichtdeutschen wahrgenommen werden kann. Nach dem Vortrag des Antragsgegners ist jedenfalls mit hoher Wahrscheinlichkeit davon auszugehen, dass eine spätere Übernahme in ein Probebeamtenverhältnis im gehobenen Polizeivollzugsdienst nicht an der Staatsangehörigkeit des Antragstellers scheitern wird. Folglich handelt es sich eher um eine technische Frage, wie im Einzelnen dies später rechtskonform bewerkstelligt wird. Für das vorliegende Eilverfahren bedeutet dies, dass sich aus den entsprechenden Fragestellungen kein Grund ergibt, allein deshalb vom Erlass der einstweiligen Anordnung zur Ermöglichung des Ausbildungsbeginns abzusehen.

Da der Antragsgegner unterliegt, hat er gem. § 154 Abs. 1 VwGO die Verfahrenskosten zu tragen.

Die Streitwertfestsetzung beruht auf § 20 Abs. 3, 13 Abs. 4 S. 1 lit. b GKG. Da das Ergebnis der einstweiligen Anordnung auf die Vorwegnahme der Hauptsache ausgerichtet ist, ist eine Reduktion des Streitwertes im

Hinblick auf den Charakter des einstweiligen Rechtsschutzverfahrens nicht angebracht. Anzusetzen ist deshalb als Streitwert der 6,5-fache Wert des Anwärtergrundbetrages für eine Ausbildung im Bereich des Einstellungsamtes von A 9 ( $829,27 \text{ €} \times 6,5$ ).

Rechtsmittelbelehrung.

## 참고판례(교도관 사례)

VG Koblenz: Justizvollzugsbeamter muss Tätowierungen bedecken<sup>93)</sup>

Der Dienstherr darf einen Justizvollzugsbeamten anweisen, seine auffälligen Unterarmtätowierungen im Dienst unter langärmeliger Dienstkleidung zu verbergen. Das Verwaltungsgericht Koblenz wies die Klage eines Justizvollzugsbeamten gegen die dienstliche Anordnung ab.

Der Kläger aus dem Raum Koblenz hat auf seinen Unterarmen Tätowierungen eines Dolches mit Schlange, eines Herzens mit Pfeil, eines Datums und zweier Namen, die etwa zwischen 6 cm<sup>2</sup> und 16 cm<sup>2</sup> groß sind. Im Mai 2004 wies die Leiterin der Justizvollzugsanstalt (JVA) Koblenz den Kläger an, seine Dienstkleidung so zu tragen, dass die Tätowierungen nicht sichtbar seien. Ansonsten führe dies zu einem Autoritäts- und Distanzverlust des Klägers gegenüber den Gefangenen. Dagegen klagte der Justizvollzugsbeamte vor dem Verwaltungsgericht Koblenz mit der Begründung, er habe bislang keine Autoritätsprobleme wegen der Tätowierungen gehabt. Die gesellschaftliche Akzeptanz gegenüber Tätowierten habe in den letzten Jahren stetig zugenommen. Außerdem sei es ihm nicht zuzumuten, seinen Dienst auch bei hohen Temperaturen und in überhitzten Räumen mit langärmeligen Hemden zu verrichten.

Die Verwaltungsrichter bestätigten die dienstliche Anordnung. Denn

93) [http://www.jurawelt.com/gerichtsurteile/pressemitteilungen/oerecht/vg/10024\(2007년 3월 4일 검색\)](http://www.jurawelt.com/gerichtsurteile/pressemitteilungen/oerecht/vg/10024(2007년3월4일검색))

Beamte seien nach dem Gesetz verpflichtet, während des Dienstes Dienstkleidung zu tragen. Durch die Uniformpflicht solle die Person des Beamten hinter seiner staatlichen Funktion zurücktreten. Das einheitliche äußere Erscheinungsbild dürfe nicht durch individuelle Gestaltungen wie etwa Haar- oder Barttracht, persönliche Accessoires oder auffällige Tätowierungen in Frage gestellt werden.

Die dienstliche Anordnung schränke zwar das Grundrecht des Klägers auf freie Entfaltung seiner Persönlichkeit ein. Diese Einschränkung sei aber gerechtfertigt, da die Anweisung die Ordnung in der Justizvollzugsanstalt gewährleiste. So werde die Distanz des uniformierten Vollzugsbeamten zu den Gefangenen insbesondere bei Vorführungen bei Gericht oder Ärzten gewahrt. Außerdem sei ansonsten das Tätowierungsverbot für Gefangene schwerer durchsetzbar.

Zwar seien Tätowierungen zunehmend in der allgemeinen Bevölkerung, insbesondere bei jüngeren Personen, verbreitet. Allerdings müsse man nach Art und Größe der Tätowierung unterscheiden. Die Tätowierungen des Klägers seien besonders auffällig, großflächig und grobschlächting. Sie seien nicht mit den kleineren, kunstvoll ausgestalteten und zumeist an anderen Stellen angebrachten Tätowierungen zu vergleichen, wie sie in letzter Zeit verstärkt im gesellschaftlichen Alltag wahrzunehmen seien. Tätowierungen, wie sie der Kläger trage, stießen beim überwiegenden Teil der Bevölkerung nach wie vor auf Ablehnung und würden eher mit einem Milieu in Verbindung gebracht, von dem die Repräsentanten der Staatsgewalt - zumal wenn sie wie der Kläger im Strafvollzug tätig seien - sich auch äußerlich klar abgrenzen sollten.

Das Verwaltungsgericht ließ die Berufung wegen der grundsätzlichen Bedeutung der Rechtssache zu.

(Urteil aufgrund der mündlichen Verhandlung vom 25. November 2004 - 6 K 2207/04.KO)

## 同사안(교도관)에 대한 고등법원 판례

<http://www.michaelbertling.de/rs/akt/ovgrp1025405.htm>(2007년 3월 4일 검색)

Beamtenrecht / Äußeres Erscheinungsbild

OVG Rheinland-Pfalz, Urteil vom 10.06.05, 2 A 10254 / 05

Ein Justizvollzugsbeamter kann zur Gewährleistung der Ordnung innerhalb der Justizvollzugsanstalt und im Interesse des Staates an einem einheitlichen und neutralen Auftreten seiner uniformierten Vollzugsbeamten aufgefordert werden, nach Art oder Größe auffällige Tätowierungen beim Tragen von Dienstkleidung zu verbergen.

Der Kläger ist Justizvollzugsbeamter. Er wendet sich gegen die Anordnung der Vollzugsanstalt, seine Dienstkleidung so zu tragen, dass seine Unterarmtätowierungen nicht sichtbar sind. Die Tätowierungen - auf dem rechten Unterarm ein Dolch mit Schlange, ein Herz mit Pfeil, ein Name und ein Datum, auf dem linken Unterarm ein Name sowie ein Schiff mit Deutschlandflagge - waren bereits bei seiner Einstellung im Jahr 1997 vorhanden. Die Beihilfestelle verneinte im Juli 2001 die Beihilfefähigkeit der Kosten für die Entfernung der Tätowierungen.

Die Klage wird abgewiesen.

Rechtsgrundlage für die Anordnung ist die Weisungsgebundenheit des

Beamten gemäß § 65 Satz 2 LBG – in Verbindung mit den einschlägigen Dienstkleidungsbestimmungen nach § 84 LBG und einer Verwaltungsvorschrift »Dienstkleidung im Bereich der Justizverwaltung des Landes Rheinland-Pfalz« – DienstkleidungsVV –.

Nach Nr. 1 dieser Verwaltungsvorschrift sind die Bediensteten des allgemeinen Vollzugsdienstes verpflichtet, während des Dienstes Dienstkleidung zu tragen. Die Uniformpflicht ist Ausdruck dessen, wie sich der Staat im Bereich des Vollzugsdienstes repräsentiert sehen will; die Entscheidung hierüber liegt im Ermessen des Dienstherrn (vgl. BVerwGE 84, 287; OVG Rh-Pf, NJW 2003, 3793). Der Uniformzwang dient der wirksamen Erfüllung der Aufgaben des Vollzugsdienstes. Die Person des Beamten soll hinter die staatliche Funktion zurücktreten. Deshalb schließt der Zwang zum Tragen einer Uniform die Pflicht des Beamten ein, das durch die Uniform bezweckte einheitliche äußere Erscheinungsbild nicht wieder durch individuelle Gestaltungen etwa von Haar- oder Barttracht, das Tragen persönlicher Accessoires oder auffälliger Tätowierungen in Frage zu stellen.

Nach Nr. 2.1 DienstkleidungsVV erfordert die ordnungsgemäße Dienstkleidung grundsätzlich das Tragen einer Dienstjacke. Die Behördenleitung kann allerdings im Innendienst sowie an heißen Tagen das Tragen der Dienstkleidung ohne Dienstjacke gestatten, wenn nicht im Einzelfall besondere Gründe entgegenstehen. Letzteres ist hier der Fall. Die Justizvollzugsanstalt durfte die Unterarmtätowierungen des Klägers zum Anlass nehmen, Einschränkungen gegenüber der generellen Gestattung vorzunehmen.

Die dem Kläger erteilte Anordnung, seine Dienstkleidung so zu tragen,

dass seine Unterarmtätowierungen nicht sichtbar sind, ist auch von Grundrechts wegen nicht zu beanstanden. Die Anordnung schränkt den Beamten zwar in der grundrechtlich geschützten freien Entfaltung seiner Persönlichkeit ein. Das allgemeine Persönlichkeitsrecht ist jedoch nicht schrankenlos gewährleistet. Es kann nach Art. 2 Abs. 1 GG nur im Rahmen der verfassungsmäßigen Ordnung ausgeübt werden. Im Rahmen seiner dienstlichen Verrichtungen ist der Anspruch des Beamten auf freie Entfaltung seiner Persönlichkeit von vornherein durch die Sachnotwendigkeiten des ihm anvertrauten Amtes begrenzt. Er unterliegt somit einer besonderen Pflichtenbindung.

Die dienstliche Anordnung verfolgt das verfassungsrechtlich legitime Ziel, die Ordnung innerhalb der Justizvollzugsanstalt zu gewährleisten sowie ein einheitliches und neutrales Auftreten der uniformierten Vollzugsbeamten zu erreichen.

Aber auch im Hinblick auf die Gewährleistung der Ordnung innerhalb der Justizvollzugsanstalt ist die dienstliche Anordnung gerechtfertigt. Gerade wegen der den Strafgefangenen erteilten Anordnung, sich während der Haft nicht zu tätowieren, leuchtet es ein, dass der Beklagte Probleme für die Durchsetzung dieser Regelung befürchtet, wenn ein Justizvollzugsbeamter seinerseits auffällig tätowiert ist. Ferner hält der Senat es für berechtigt, wenn der Beklagte beim Offenbaren von Tätowierungen wie im Falle des Klägers die Möglichkeit eines Distanzverlustes zu den Strafgefangenen und damit eine Schwächung der Autorität und Akzeptanz des Beamten befürchtet.

Gegenüber diesen gewichtigen dienstlichen Interessen an der Dienst-

kleidungsregelung wiegen die dem Kläger zugemuteten Einschränkungen seiner Persönlichkeitsentfaltung weniger schwer. Denn die Maßnahme trifft ihn nur innerhalb des Dienstes für die Zeit des Tragens seiner Dienstkleidung. Auf seine Persönlichkeitsentfaltung im außerdienstlichen Bereich hat die Anordnung keine Auswirkungen.

Auch der Umstand, dass der Kläger trotz des Vorhandenseins der Tätowierungen eingestellt worden ist, rechtfertigt keine andere Beurteilung.

Schließlich ist die dienstliche Anordnung auch mit dem Gleichbehandlungsgebot (Art. 3 Abs. 1 GG) vereinbar. Der sachliche Grund für die unterschiedliche Behandlung des Klägers im Vergleich zu seinen Kollegen besteht in der großflächigen und auffälligen Tätowierung seiner Unterarme, die beim Tragen kurzärmeliger Hemden mit dem zu fordernden äußeren Erscheinungsbild eines Justizvollzugsbeamten nicht vereinbar ist.